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7. 6. 14 (수요일), 14:00 ~ 20:5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이재범, 박광춘, 박소현, 유재춘, 이경찬,
이승용, 이영식, 이재운, 이종욱, 최성락,
한필원, 허창수(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부산 연산동 고분군 사적 지정	(공 개)
2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공 개)
3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공 개)
4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내 성곽길 조성 사업	(공 개)
5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내 헬륨기구 운영 연장(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6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내 낙석위험지 및 급경사지 정비	(공 개)
7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등 내외 보도(보행로) 설치	(공 개)
8	사적 제537호 파주 덕진산성 내 성곽정비 및 주변정비	(공 개)
9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내 근린공원 환경개선	(공 개)
10	사적 제118호 진주성 내 가스시설공사	(공 개)
11	사적 제118호 진주성 내외 시굴조사	(공 개)
12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내 야외공연장 설치	(공 개)
13	사적 제233호 남해 충렬사 내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설치	(공 개)
14	사적 제515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 내 고분전시관 건립	(공 개)
15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내 도심진입부 정비사업	(공 개)
16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내 경관조명 설치	(공 개)
17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내 승모전 건립	(공 개)
18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내 관람객 탐방시설 설치	(공 개)
19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내 화장실 신축 및 식생 정비	(공 개)
20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내 임시주차장 사용기간 연장(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21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남산샘터 음수대 상부 보호 시설 설치	(공 개)
22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통일전 주차장 화장실 신축	(공 개)
23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내외 도로 확포장 공사	(공 개)
24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내 수목식재	(공 개)

25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등 내 경관조명 설치	(공 개)
26	사적 제44호 부여 군수리 사지 내 저온저장고 및 컨테이너 설치	(공 개)
27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주변 복선전철 터널 개설	(공 개)
28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29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주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 개)
30	사적 제472호 창원 진동리 유적 주변 도로개설 연장(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31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주변 관람대 구조물 설치	(공 개)
32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주변 매화마름 서식지 내 시설물 설치	(공 개)
33	사적 제336호 구미 낙산리 고분군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공 개)
34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공 개)
35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등 신축	(공 개)
36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공 개)
37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공 개)
38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공 개)
39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40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공 개)
41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42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 개)
43	사적 제332호 울주 검단리 유적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44	사적 제332호 울주 검단리 유적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45	사적 제381호 여수 충민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46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검토사항】		
47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48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공 개)
49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공 개)
50	사적 제454호 김해 양동리 고분군 보호구역 지정 검토	(공 개)

51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검토	(공 개)
52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경역정비 검토	(공 개)
53	사적 제439호 원주 강원감영 정비복원 사업 변경 검토	(공 개)
54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 종합정비계획 검토	(공 개)
55	사적 제387호 공주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변경 검토	(공 개)
56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북망문 복원 관련사항 검토	(공 개)
【보고사항】		
57	중요 문화재 사용 석회 시편 채취 보고	(공 개)
58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내 역사문화관 친환경 관리 시설물(태양광판) 설치 보고	(공 개)
5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7-06-001

1. 부산 연산동 고분군 사적 지정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의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
- '17년도 사적분과 제2차 위원회('17.2.15.)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실시('17.3.2.~'17.4.1.)
 - 지정 예고 결과 의견 없음.

다. 지정예고 내용

- 문화재 명칭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90-4
-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33필지 66,068m²
- 관리단체 : 부산광역시 연제구

라.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연산동 고분군(부산광역시 기념물 제2호, '72.6.26. 지정)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90-4
- (3) 지정신청 명칭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 (4)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면적 : 문화재구역 33필지 66,068m²
- (5) 관리단체(안) : 부산광역시 연제구
- (6) 신청사유
 - 낙동강 하류지역의 고층고분군으로서 삼국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밝히고 고대의 선진적이고 전통적인 토목·건축기술의 원형을 구명할 수 있는 특별한 사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마. 현지조사의견('15.06.08./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사적

○ 명칭(안)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 지정명칭 부여 기준인 지역명+문화재명에 의해,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부산 연산동고분군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산 90-4·5·7번지 일원으로 현재 부산시내의 거의 중심부에 해당함. 해발 427.9m의 황령산에서 북쪽으로 뺀 지맥에 속하는 표고 254m의 배산(盃山)의 북쪽으로 뺀어 나온 40m~60m 전후의 완만한 능선에 위치하는 고분군으로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대형의 성토분구를 가진 고분 18기가 남북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음.

○ 고분군 주위는 삼한,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유적 밀집지역으로 온천천 북쪽 동래역 일대에는 북천동 고분군(사적 제273호)과 연산동 고분군을 만든 사람들의 마을과 동래패총(사적 제192호)이 위치하고, 북서쪽에는 조선시대 동래읍성지가 위치함.

○ 온천천을 사이에 두고 북천동 고분군과 연산동 고분군이 마주보고 있으며, 남쪽 배산 일대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배산성이 남쪽에는 통일신라~고려시대의 동래군 치소인 동래고읍성지가 있고, 그 남쪽에는 경상좌수영성지가 위치함.

(3) 연혁·유래 및 특징

○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7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수혈식석곽이 확인됨.

○ 연산동 고분군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의 삼국시대 부산지역에서 유일한 거대 고총 고분군이자 석곽 및 봉분 축조 과정마다 매장 과정을 보여주는 의례행위가 확인되었고, 해안에 위치하여 삼국시대 해양세력의 존재 양태를 구명할 수 있는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유적임.

● **발굴조사·봉분 복원공사 등에 따른 현상변경**

- 2008. 6월: 연산동고분군 정비·복원 계획 수립
- 2009. 3월: 고분군 숲 가꾸기 사업(봉분 위의 수목 제거)
- 2009.10월: 고분군 우수관거 설치
- 2009.12월: 매장문화재 발굴(1차)
- 2011. 6월: 매장문화재 발굴(2차)
- 2012. 8월: 매장문화재 발굴(3차)
- 2013. 2월: 봉분 복원 보수정비공사
- 2013. 7월: 봉분 복원공사 등
- 2013.11월: 수목제거, 배수로 설치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연산동고분군은 부산지역의 유일한 고총고분군으로서 1940년 이전인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갑주류가 출토되어 주목받았고,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1972년 6월에 부산직할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음.
-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7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혈식석곽이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의 첨단 토목·건축 기술을 구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천동고분군과 더불어 삼국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구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평가되어왔음.
- 연산동고분군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의 삼국시대 부산지역에서 유일한 거대 고총고분군이자 석곽 및 봉분 축조 과정마다 매장 과정을 보여주는 의례행위가 확인되었고, 해안에 위치하여 삼국시대 해양세력의 존재 양태를 구명할 수 있는 등 부산지역 고대사 복원에 절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유적임이 확인되었음.
- 연산동고분군의 고총고분의 봉분 조사를 통해 연약지반 강화, 구획성토와 작업로, 소형의 점토피 사용, 봉분 하중 감속 및 완화, 단면 삼각형의 흙둑 쌓기·부엽공법 등 다양한 토목기술이 구현되었고, 점토 미장과 고정 기술, 거대한 뚜껑돌 이동과 안전한 적재를 위한 건축기술, 밀봉을 위한 등 삼국시대의 선진 토목 및 건축기술이 확인되어 우리의 전통 토목·기술의 원형 구명 및 복원을 위한 최적의 유적임.
- 북천동고분군의 묘제 및 구조 등을 계승하면서 신라의 토기 등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융합하고 발전시킨 유적으로 판단됨.

(5) 지정 대상 및 범위 검토

- 사적 지정 신청은 문화재구역 33필지 66,068㎡ 신청함.

■ 검토의견 : 신청범위는 적정함



(6)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

- 검토의견 : 고분군 주변은 이미 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상황으로 신청안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항 목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3:10이상)	용 도
1구역	○ 개별심의		100m 이내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500m 이내
4구역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1~3구역 내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1~3구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함.		

(7) 종합 의견

-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부산지역의 고총고분군으로서 1940년 이전인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갑주류가 출토되어 주목받았고,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1972년 6월에 부산직할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음.
-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7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청동기 시대 집석유구 4기, 삼국시대 고총고문 18기·분묘 136기, 삼국시대 취사 시설 3기, 토기편 집중유구 2기, 구상유구 2기, 벽구시설 1기, 주혈군 1기, 고려시대 수혈유구 1기, 고려·조선시대 분묘 110기, 건물지 추정유구 3기, 가마 1기, 묘역석 2기, 조선시대 이후 수혈 1기 등 총 28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음.
- 출토유물은 삼국시대 및 조선시대 분묘에 부장된 토도류 및 금속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확인된 수량은 총 3,700여점임.
- 또한 조사 결과, 석곽 및 봉분 축조 과정마다 매장 과정을 보여주는 의례 행위가 확인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혈식석곽이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의 첨단 토목·건축 기술을 구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천동고분군과 더불어 삼국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구명할 수 있는 유적으로서 평가되어왔음.
- 그러나 현재, 고분군의 주체나 성격에 있어 가야고분인지 신라고분인지 분명하게 규정하기 어려워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학술 검토를 거쳐 고분군의 주체나 성격이 명확해진 시점에 사적 지정이 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바.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2.08/문화재위원 ○○○, ○○○, ○○○, ○○○, ○○○)

- 연산동 고분군은 구릉 정상부에 조성된 고총고분으로 18기가 정비되어 있으며, 그 중 3기가 발굴조사 되어, 입지적인 조건 및 유물 안치방법은 가야 고분군인 복천동 고분군의 전통을 받고, 안치된 토기와 봉분 조성은 신라적인 요소가 가미된 중요한 유적임.
- 연산동 고분군의 동·서쪽 경사면에도 수 십 기의 석곽분이 분포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사적(신청지) 지정 면적 조서

○ 문화재구역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면적: m 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성 명	주소
계				66,068	66,068		
1	연산동	산90-4	임	164	164		
2	"	산90-5	임	694	694		
3	"	산90-7	임	14,408	14,408		
4	"	산90-18	도	81	81		
5	"	산90-19	임	5,078	5,078		
6	"	산90-20	임	993	993		
7	"	산90-21	임	1,828	1,828		
8	"	산90-22	임	6,507	6,507		
9	"	산90-23	임	169	169		
10	"	산90-24	임	27	27		
11	"	산90-25	임	21	21		
12	"	산90-26	임	37	37		
13	"	산90-27	임	42	42		
14	"	산91-1	임	218	218		
15	"	산91-3	임	1,874	1,874		
16	"	산92-2	임	4,860	4,860		
17	"	산120-1	임	13,918	13,918		
18	"	산120-2	임	62	62		
19	"	산121-1	임	4,265	4,265		
20	"	산121-2	임	198	198		
21	"	산121-3	임	99	99		
22	"	산121-4	임	2,952	2,952		
23	"	산121-5	임	11	11		

24	"	산121-6	임	45	45		
25	"	산122	임	1,074	1,074		
26	"	산122-1	임	1,057	1,057		
27	"	산122-2	임	348	348		
28	"	2274	공원	2,764	2,764		
29	"	913-2	대	36	36		
30	"	914	전	231	231		
31	"	914-1	전	1,987	1,987		
32	"	915-4	전	17	17		
33	"	915-5	대	3	3		

(3)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사적	<p>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p> <p>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p> <p>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난 것</p> <p>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p> <p>라.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p> <p>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p> <p>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p> <p>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p> <p>다. 역사(驛舍)·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p> <p>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p> <p>마. 제단, 지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p> <p>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p>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2.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II권역에 속하는 4필지 556㎡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7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회의(2017.4.12)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7.4.21.(문화재청 공고 제2017-162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기존지정 면적 : 1,341필지 386,808.3㎡
 - 추가지정 : 4필지 556㎡
 - 추가지정 후 면적 : 1,345필지 387,364.3㎡
- (4) 지정 사유
 - 풍납토성 내 II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7.2.17, 2.24, 3.13, 3.14)
 - II권역은 풍납토성의 핵심권역(사적지정·매입예정지에 해당)으로 해당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78	대	202	202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2-38	대	116	116		
3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37	대	102	102		
4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73	대	136	136		
합계		4필지		556	556		

3.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사적 추가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379번지 외 5필지(2,351㎡)를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신청함.

다. 지정예고 내용

- 2017년 제3차 사적분과 위원회('17.3.8.) 검토 결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추가 지정하기로 의결되어 사적 추가지정 예고 실시
 - 지정 예고일 : 2017.3.29.(문화재청 공고 제2017-127호)
 - 지정 예고기간 : 2017.3.29~4.28.
 - 지정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지정면적 : 경북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379번지 외 5필지(2,351㎡)

라.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사적 제516호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 등
- (3) 신청내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계				2,351	2,351		
1	경북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379	전	368	368		
2		379-4	전	530	530		
3		379-5	전	500	500		
4		379-6	전	518	51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5		380	대지	432	432		
6		397-4	대지	3	3		

(4) 신청사유

- 발굴조사 결과 원삼국시대 목관묘, 삼국시대 목곽묘, 석곽묘 등 다수의 고분이 확인되었으며, 인접한 부적리 고분군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밝혀짐.
- 특히, 379번지에서 조사된 제사와 관련된 유구는 압독국 최고 지배자의 무덤인 조영동 고총의 축조와 관련된 시설인 것으로 추정되며, 임당유적 발굴조사에서는 최초로 발굴되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마. 참고사항

- (1) 현지조사('17.02.10/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대 ○○○)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조사보고서]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사적 추가지정 조사보고서(별첨자료)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7.2.10(금)
- 조사자 : 문화재위원 ○○○·○○대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慶山 林堂洞과 造永洞 古墳群)을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慶山 林堂洞과 造永洞 古墳群)”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지역경+문화재명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慶山 林堂洞과 造永洞 古墳群)”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경산시 임당동과 조영동, 압량면 부적리에 걸쳐 형성된 임당구릉은 『三國史記』 및 『三國遺事』에 확인되는 압독국(押督國)의 중심 읍락이 위치했던 곳으로, 발굴조사에서 압독국 최고 지배자들의 고분군으로 밝혀진 사적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과 토성, 저습지, 마을유적, 환호 등 복합유적이 발굴조사된 지역이다.
임당유적은 1982년 도굴로 인한 학술발굴과 1988년 이후 택지개발로 인한 발굴조사에서 압독국의 실체가 밝혀졌으며, 특히 신라식 금동관, 허리띠장식, 귀걸이, 인골자료, 동식물자료 등 고대 사회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물과 자료가 다량으로 발굴되어 고대사 및 신라 지역사 연구에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압독국(押督國)은 경주의 사로국을 비롯하여 원삼국시대 영남지방에 분포하고 있던 진·변한(辰弁韓) 소국 중의 하나였다. 『삼국사기』에는 ‘압량소국(押梁小國)’·‘압독국(押督國)’ 관련 기록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데, 지금도 경산에는 ‘압량’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1980년대 초 임당동 고분에서 도굴된 유물이 해외로 밀반출되려다가 적발된 것이 계기가 되어 발굴조사가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이곳이 옛 문헌에 기록된 압독국의 중심 고분군임이 서서히 밝혀지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유적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임당유적 대부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유적에서는 임당동 고분군·조영동 고분군·부적리 고분군·신대리 고분군으로 구성된 대규모 고분군과 환호(環濠)·토성(土城)·주거지·소택지(沼澤地) 등 다양한 생활유적이 함께 발굴되었다. 유적은 기원전 2세기에 처음 널무덤[木棺墓]

이 조영되기 시작하여 기원후 7세기 경의 돌방무덤[石室墓]이 만들어지기 까지 대략 800년 동안 단절 없이 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약 1,500여기에 달하는 무덤과 25,000여 점에 달하는 방대한 유물은 압독국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5세기 경에 축조된 고총고분에서는 수많은 토기와 철기를 비롯하여 금동관·금동관식·은제허리띠·고리자루칼[環頭大刀] 등 최고지배자를 상징하는 유물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러한 권력을 상징하는 위세품(Prestige goods)은 경주의 신라왕실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압독국이 신라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임당유적 무덤에서는 많은 인골자료가 출토되어 압독국의 순장(殉葬) 풍속과 혈연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택지에서는 나무로 제작된 나막신·겹·국자·갑옷틀·그릇·빗 등과 함께 점을 칠 때 사용한 복골(卜骨), 뼈바늘 등 압독국 사람들이 실생활에 사용한 유물이 출토되어, 1500여년이 지난 압독국의 타임캡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12년 임당·조영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의거 '14년부터 임당·조영동 고분 주변 울타리 및 탐방로 정비를 위한 정비공사 시행 중에 있다.

동일 고분군인 부적리 고분군에 대한 긴급발굴조사가 2016년 계획되어 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경산시 임당유적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기록된 압독국(押督國)의 중심읍락이었음이 지금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압독국(押督國)은 경주의 사로국을 비롯하여 원삼국시대 영남지방에 분포하고 있던 진·변한(辰弁韓) 소국 중의 하나로, 『삼국사기』에는 ‘압량소국(押梁小國)’·‘압독국(押督國)’ 관련 기록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또 신라가 삼국통일을 위한 전초기지로 김유신과 김인문이 압량주 군주로 파견되었을 만큼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사적 제516호로 지정된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을 비롯한 임당유적은 1982년과 1988년 압독국 최고 수장층의 고분이 발굴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택지개발로 인한 대규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 발굴결과 1,500여기의 고분과 토성, 저습지, 주거지 등 다양한 유구와 2만 5천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신라식 금동관, 허리띠장식, 귀걸이 등 고대 지역 사회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물이 다량으로 발굴되어 고대사 및 신라 지역사 연구에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 금회 추가 지정될 압량면 부적리 379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에서는 원삼국시대 목관묘와 옹관묘 등 11기, 삼국시대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및 제의유구 9기,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 1기, 고려시대 분묘 2기 등 다양한 유구와 토기 등 유물 241점이 출토되었다. 특히 임당유적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적석유구(積石遺構)는 5~6세기 압독국의 상장례(喪葬禮)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 시굴조사에서 379-4번지, 379-5번지, 379-6번지에서도 고분이 분포하고 있으며, 유적에서 북동쪽으로 100m 지점에는 아직 발굴 조사되지 않은 부적리 고층이 분포하고 있어 동일한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신청면적 : 6필지, 2,35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계				2,351	2,351		
1	경북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379	전	368	368		
2		379-4	전	530	530		
3		379-5	전	500	500		
4		379-6	전	518	518		
5		380	대지	432	432		
6		397-4	대지	3	3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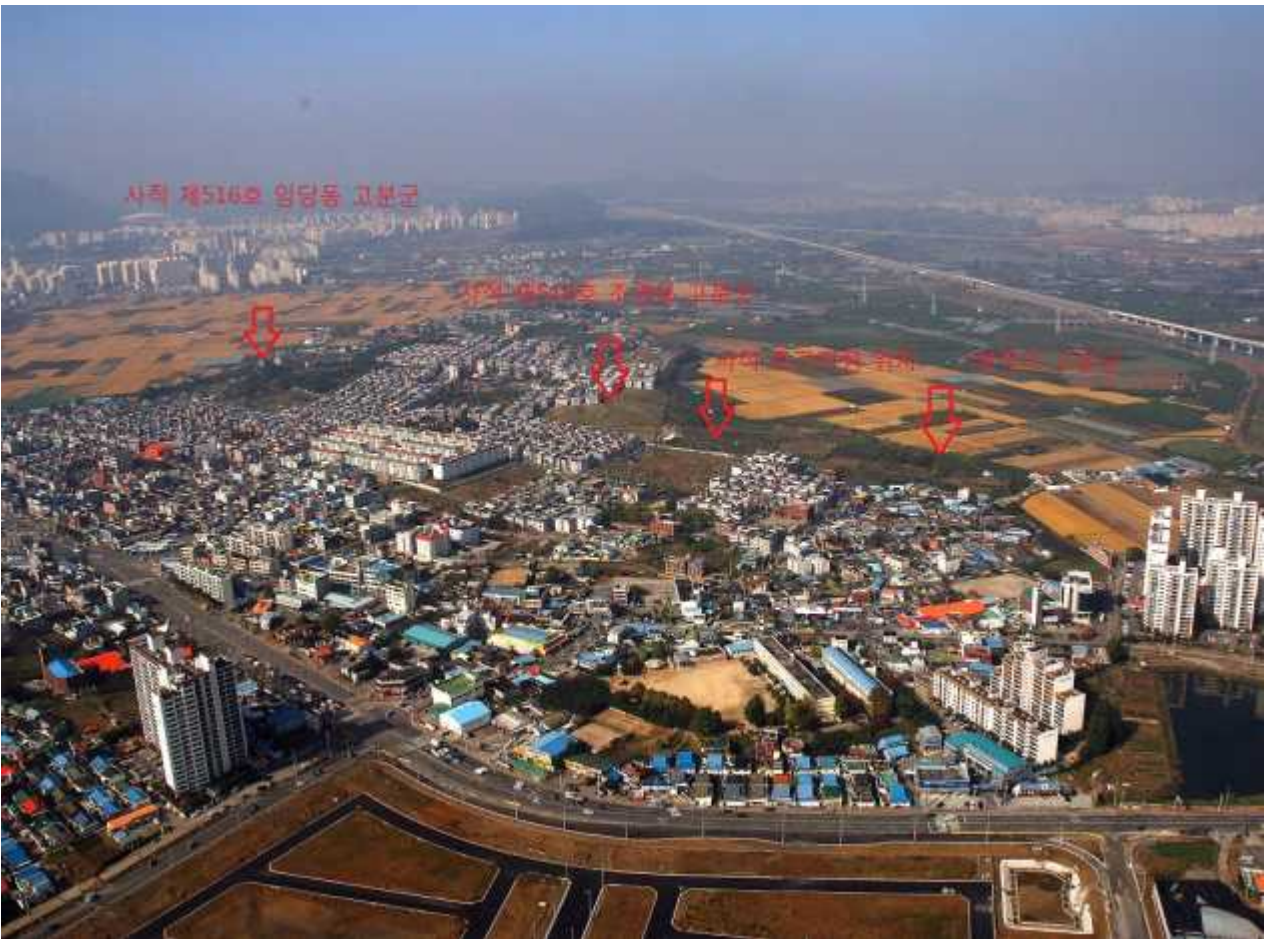
수지도



지형도



지적도



유적 원경



유적 근경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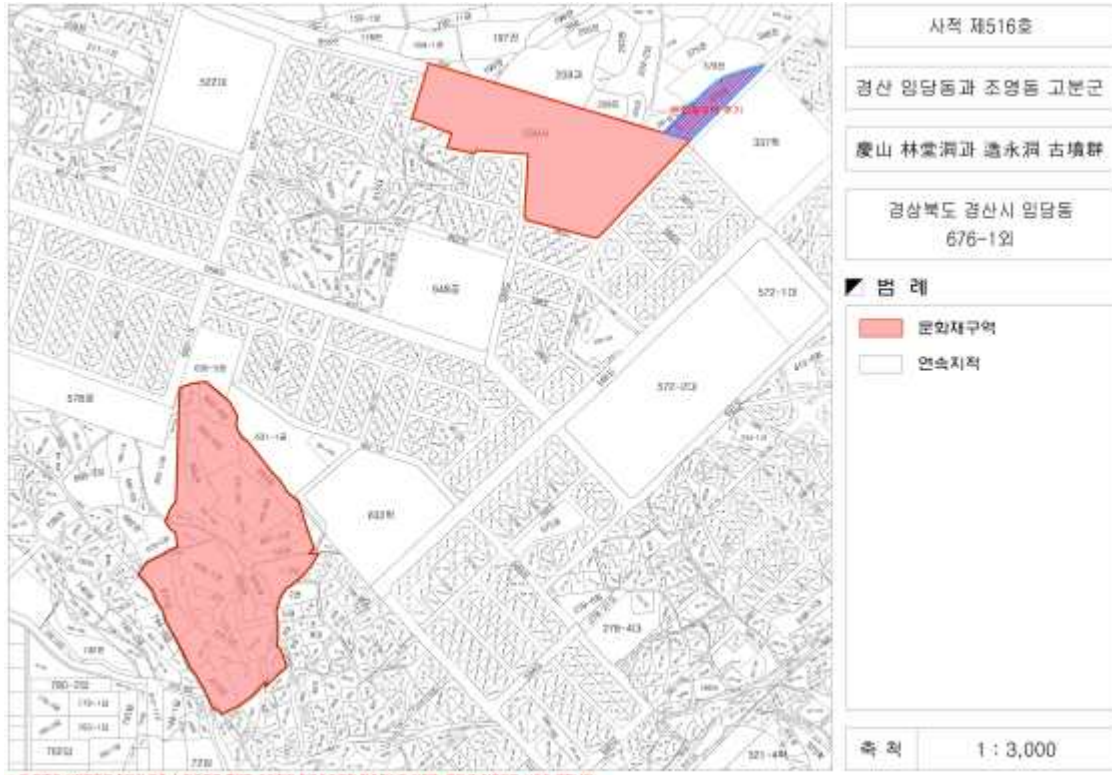
추가 지정지 내에서 발굴된 적석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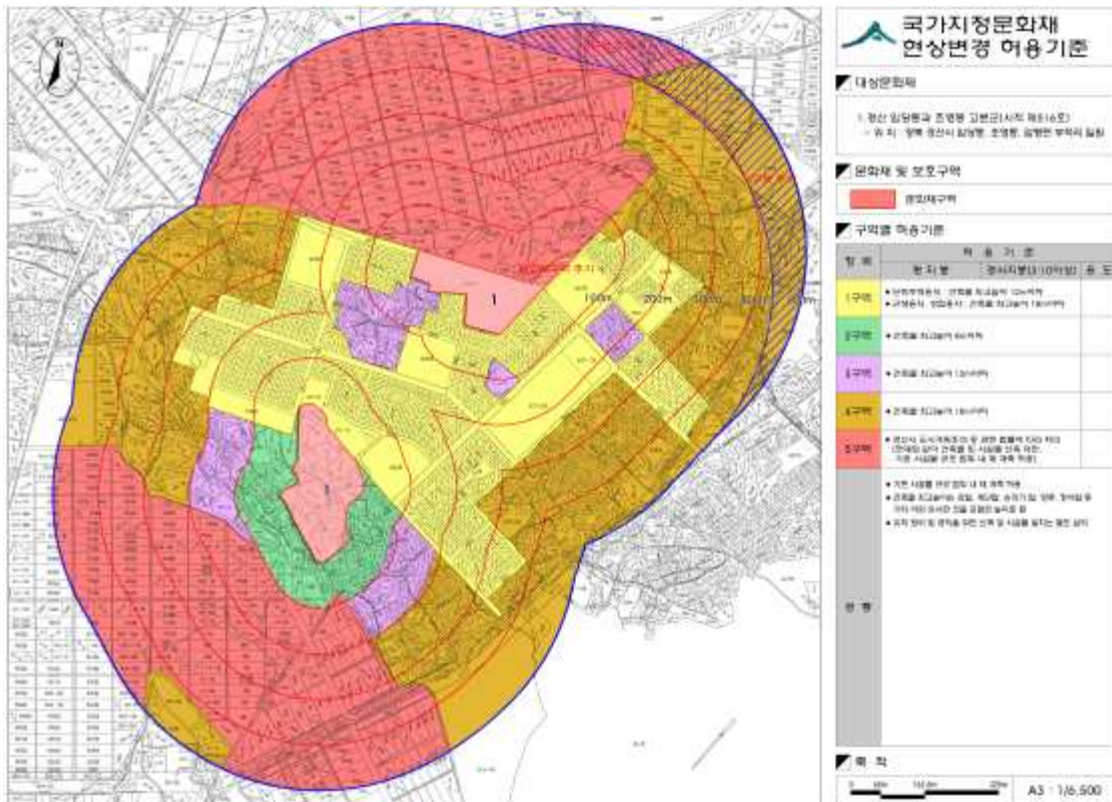
추가 지정지 내에서 발굴된 적석유구 전문가 검토회의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추가지정에 의해 확대된 범위는 계획과 같이 연접지역의 허용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하여 확인하여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실수하지 마시기 위하여, 복제 및 무단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하여 확인하여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실수하지 마시기 위하여, 복제 및 무단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1 유적 보존 정비 계획

- 경산시에서는 <압독문화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을 체계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있다. 2015년 임당동 1호분 시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임당동 1호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계획되어 있다.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임당토성 내부도 정비복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 지금까지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굴의 피해를 입는 등 정비가 시급했던 부적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도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착수할 예정이다.
- 이번 사적추가지정 신청된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379번지 일원은 기 지정된 조영동고분군과 연접해 있어 고고학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또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부적리 고분군과 조영동 고분군은 동일한 고분군임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따라서 2016년 부적리 고분군 BVI호분 발굴조사 후 부적리 고분군 일대 약60,000㎡에 대해서도 사적으로 추가지정하여 정비복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적 제516호 조영동 고분군 및 부적리 고분군 위치도

2

압독유적 종합정비계획

■ 사업개요

- 대상문화재 :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
-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 외 35필지
- 면적 : 임당동고분군 35,603㎡, 조영동고분군 24,657㎡
- 사업기간 : 2006년 ~
- 소요예산 : 46억원 정도(종합정비계획 용역결과)

■ 사업 주요내용

- 임당동고분군 사유지 매입 및 민묘 이장
 - ※ 사유지 현황 : 9필지 3,997㎡
- 고분군 보호 울타리 정비
- 고분군 탐방로 정비
- 유적 전시관 리모델링

■ 지금까지 추진현황

- 2006~2012 : 임당동고분군 사유지 매입(1,173㎡)
- 2012. 12. : 압독문화유적 종합정비계획 용역완료
- 2013. 11. : 임당동고분군 내 개인묘지 6기 이장(총15기)
- 2014. 12. : 보호책 정비 및 잔디식재(400백만원)
- 2015. 11. : 임당1호분 시굴조사 완료

■ 향후 계획

- 2016. 7. : 임당1호분 정밀발굴조사 실시
- 2016. 5. : 임당동 고분군 CCTV설치
- 2017~ : 유적전시관 리모델링 및 유적공원 조성
 - ※ 사적 미지정된 부적리 고분군 발굴 후 사적 추가지정



압독문화 종합정비계획도(임당동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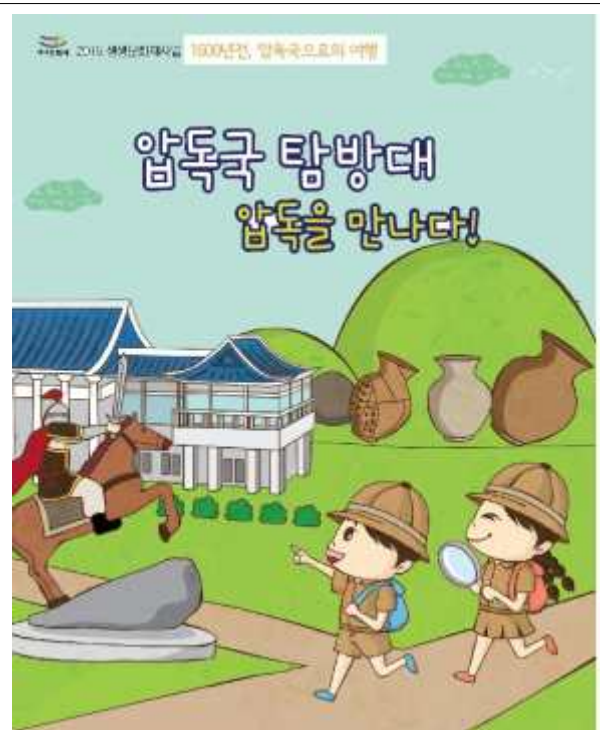
압독문화 종합정비계획도(조영동 고분군)

3 유적 활용계획

- 경산 임당유적은 그동안 발굴조사에서 1천 500여기의 고분과 25,000여 점이 넘는 방대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 고분뿐만 아니라 토성, 저습지, 주거지 등 다양한 생활유적도 함께 발굴되었다.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종류도 다종다양해 삼국시대 지방 수장층의 면모를 보여주는 화려한 금공품과 장식말갓춤[馬具]을 비롯해 생선뼈, 동물뼈, 과일 씨앗, 목기류, 점뼈[卜骨] 등 고대인들의 실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도 방대하게 출토되었다.
- 이러한 유물과 자료들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유적은 삼국시대 지방사회의 모습을 재현한 유적공원으로 정비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유적과 유물에 담겨있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압독국 체험축제(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를 지난 2012~2015년 개최한 바 있는데,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압독국 고분체험축제 포스터



압독국 탐방대 포스터



압독국 고분체험축제 모습(조영동 고분군)



압독국 고분체험축제 모습(조영동 고분군)

9. 종합 의견

- 경산시 임당유적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기록된 압독국(押督國)의 중심 읍락이었음이 지금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압독국(押督國)은 경주의 사로국을 비롯하여 원삼국시대 영남지방에 분포하고 있던 진·변한(辰弁韓) 소국 중의 하나로, 『삼국사기』에는 ‘압량소국(押梁小國)’·‘압독국(押督國)’ 관련 기록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또 신라가 삼국통일을 위한 전초기지로 김유신과 김인문이 압량주 군주로 파견되었을 만큼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은 1982년과 1988년 압독국 최고 수장층의 고분이 발굴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택지개발로 인한 대규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 발굴결과 1,500여기의 고분과 토성, 저습지, 주거지 등 다양한 유구와 2만 5천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신라식 금동관, 허리띠장식, 귀걸이 등 고대 지역 사회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물이 다량으로 발굴되어 고대사 및 신라 지역사 연구에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 금회 추가 지정될 압량면 부적리 379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에서는 원삼국시대 목관묘와 옹관묘 등 11기, 삼국시대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및 제의유구 9기,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 1기, 고려시대 분묘 2기 등 다양한 유구와 토기 등 유물 241점이 출토되었다. 특히 임당유적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적석유구(積石遺構)는 5~6세기 압독국의 상장례(喪葬禮)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 시굴조사에서 379-4번지, 379-5번지, 379-6번지에서도 고분이 분포하고 있으며, 유적에서 북동쪽으로 100m 지점에는 아직 발굴 조사되지 않은 부적리 고총이 분포하고 있어 동일한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적으로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 그리고 추가지정지와 연접한 부적리 고분군은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의 고분과 성격을 같이 하는 유적으로서, 향후 부적리 고분군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

4.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내 성곽길 조성 사업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내 울산 중구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내에 울산 중구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사적분과 제2차 위원회('17.02.15.) 부결 : 문화재의 역사성과 부합하지 않음
- 사적분과 제4차 위원회('17.04.12.)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1987.07.18 지정)
 - 소재지 : 울산시 중구 서동 일원
- (3) 신청내용<울산 중구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 사업>
 - 병영성 북문지 잔디광장(조형물 내용과 규모 변경)
 - 위치 : 울산시 중구 동동 51-14, 18, 19(북문지, 문화재보호구역)

- 수정 후

- 기존의 휴게벤치와 수목 유지
- 병영성 축성 600주년 기념공원 조성 계획 - 지표석 설치



○ 병영성 서문지(주차장 조성→공원조성→공원 디자인 변경)

- 위치 : 울산시 중구 남외동 9-7, 18, 19(서문지, 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수정 후

- 인근 주민과 탐방객을 위한 휴게공원 조성
- 병영성을 감상할 수 있는 벤치 등의 휴게시설 설치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2.08/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건은 울산경상좌도병영성의 600주년 기념공원을 서문지와 북문지 보호 구역에 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문지는 공원화하여 옹성의 완충구역 개념으로 계획되었으면 좋겠음. 또한 과발길의 표식에 대한 디자인과 위치 등이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북문지 주변은 울산 병영성과 관련된 상징적인 상징물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공원조성 자체도 울산 병영성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개념의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요망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

5. 수원 화성 내 헬륨기구 운영 연장(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내 헬륨기구 운영 연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수원 화성 내 헬륨기구 설치 건에 대하여 연장 운영하려고 신청한 사안임.
 - '15년 11차 위원회('15.11.11.) 조건부 가결 : 허가기간 1년(2016.1.1.~12.31.), 허가기간 만료시 연장허가 신청, 월1회 안점점검
 - '16년 12차 위원회('16.11.09.) 조건부 가결 : 6개월 연장(2017.1.1.~6.30.)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수원 화성(사적 제3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 (3) 신청내용<헬륨기구 운영 연장>
 - 허가기간 연장 : 당초 6개월에서 추가 3년 연장
- (4) 신청인 의견
 - 헬륨기구 운영 연장을 통하여 많은 관광객에게 주·야간으로 수원 화성의 아름다움을 관람하고 전국 유일의 헬륨기구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수원 화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함
 - 모니터링 자료 제출할 것

6. 북한산성 내 낙석위험지 및 급경사지 정비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내 재난취약지구 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북한산국립공원 내 낙석위험지 및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북한산성(사적 제162호 / 1968.12.05.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외 일원
- (3) 신청내용<낙석위험지 및 급경사지 정비>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백운봉암문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낙석위험지 : 낙석방지책 30m(높이-2.333m)
 - 급경사지 : 목재데크 43m(데크 폭-1.5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7. 남한산성 등 내외 보도(보행로)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및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요지」 내외의 지방도 342호선에 보도설치 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남한산성 동문 일원 지방도 342호선 보도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안임.
- '17년 5차 위원회('17.05.2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 1963.01.21. 지정),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원, 오전리 일원
- (3) 신청내용<보도(보행로) 설치>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리 390-1 외(문화재구역, 1구역)
 - 사업내용

남한산성면 광지원리~남한산성 동문 지방도 342호선 보도설치 공사		비고
보도설치 길이L=6.36km / 보도설치 폭 B=1.2~2.0m		
남한산성 구간 L=1.127km	광주 조선백자 요지 구간 L=1.78km	
산지부-콘크리트 칼라블록 하천변(지주 형태)-자연목재 데크 ※ [L=537m, 간격8m;지주 67개 설치]	산지부-콘크리트 칼라블록 하천변(캔틸레버)-자연목재 데크 ※ [L=886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5.31/문화재위원 ○○○)

-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존 차도에서 산지 방향으로 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이 조망, 경관, 일체성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최소한의 현상변경이 최선으로 여겨짐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산지방향으로 보도 설치할 것

8. 파주 덕진산성 내 성곽정비 및 주변정비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537호 「파주 덕진산성」 문화재구역 내 성곽 정비 및 주변정비 공사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5~2016년 덕진산성 학술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서측성벽 및 집수지 정비와 주변정비 공사를 통하여 유적의 훼손을 막고 관람이 용이하도록 신청한 사항임
- '17년 3차 위원회('17.03.08.) 보류 : 복토를 먼저 시행 후 보존방법에 대한 세부계획 제출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덕진산성(사적 제537호)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1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성곽정비 및 주변정비>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13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전체 서측 성벽 60m중 약 L=20m 정비(나머지 성벽은 복토)
 - 1, 2호 집수지 복토 후 상부에 3~4단 높이로 재현
 - 탐방로 마사토 포장, 로프난간 및 관람데크 설치
 - 종합안내판 설치
 - 사업비 : 200,000천원(도비 100,000천원, 시비 100,000천원)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할 것
 - 사업시행 중 고고학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

9. 서울 풍납동 토성 내 근린공원 환경개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내 근린공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내 근린공원의 노후된 편의시설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74 일대
- (3) 사업내용<근린공원 환경개선>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74, 76(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시설물 교체 : 파고라 1조, 조합놀이대 1조 및 바닥포장, 운동시설물 6조 및 벤치 설치
 - 산책로 정비 : 마사토 포장 260m(폭 1.2m)
 - 수목 식재 : 배롱나무, 산수국 등 8종 7,960주
 - 초화류 식재 : 1종 1,020본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가. 관계전문가 검토의견('16.05.16/○○대 교수 ○○○)

- '풍납토성 환경 개선사업'의 실시설계 도면을 살펴본 결과 퍼걸러 디자인, 도입 수종, 식재 패턴 등에서 문화재 권역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문화재 권역은 일반 공원과 다르게 접근해야 하나 현재 안은 일반 공원과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 계획안임. 전체적인 공간은 ‘문화재 권역의 특징을 살리고, 도입시설물 및 수목의 화색이 채도가 높지 않으며, 주변과 이질적이지 않은 조화로운 디자인’을 지향해야 함. 이에 대해서 각 부분별 의견을 아래와 같음
- 휴게시설 퍼걸러
 - 문화재 권역에서 조경시설물 도입 시 해당 문화재를 위압하지 않고 문화재로 오인되지 않는 형태, 반짝이지 않는 재질,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고려해야 함
 - 현재 도면에 포함된 육각정자 디자인은 풍납토성과 관련된 없는 문양이 과도하며, 어설픈 전통을 추구한 형태로 디자인 변경이 요구됨
 - 기존 육각정자가 설치된 가용면적은 활용하면서 주민 휴게시설 요구를 수용하고 주변에 조화로운 디자인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함
- 야외 운동시설물 설치
 - 되도록 운동시설물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최소한의 개수를 도입해야 함. 운동시설물의 색채와 형태는 문화재 권역에 도입되는 시설인 만큼 채도가 낮은 차분한 색채와 반짝이지 않는 표면 마감이 필요함. 더불어 운동시설 배치는 분산 배치보다는 필요 숫자만큼 집중 배치가 요구됨
- 포인트 식재
 - 산책로의 교통섬에 도입된 반송보다는 기존 생육이 양호한 공작단풍을 그대로 살리도록 함. 다만 교체가 필요 화단의 경우 문화재로의 시선을 가리지 않는 배식기법과 경관성 향상을 위해서 아교목성 배롱나무를 균식을 제안함. 이때 하부식재는 수호초보다는 전통 초화류에 해당하는 옥잠화 또는 비비추를 식재하도록 함
- 관목 수종과 식재 패턴
 - 현재 산책로 주변에 도입된 관목은 회양목, 무궁화, 산수국, 산철쭉, 수수꽃다리, 화살나무, 황매화 등임. 이중에서 무궁화는 풍납토성이라는 공간적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에 식재된 무궁화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추가 보식이 필요하지 않음
 - 도입 관목 중 산철쭉 등은 화색의 채도가 높은 수종으로 문화재 권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함
 - 현재 식재 패턴은 공간의 성격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산책로 주변에 별다른 웬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웬스와 동선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순한 형태의 식재패턴이 필요함. 이를 반영하여 회양목
군식이 단조롭게 느껴지는 부분에는 수수꽃다리, 산수국, 모란 등으로
포인트 식재를 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0. 진주성 내 가스시설공사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사적 제118호 「진주성」 내에 가스시설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진주성 내 국립진주박물관 보일러 교체에 따른 LPG저장시설 및 배관 설치 공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진주성(사적 제118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남 진주시 남성동 212-9
- (3) 신청내용<가스시설공사>
 - 위치 : 경남 진주시 남성동 212-9(문화재구역)
 - 내용
 - 노후 보일러 2대(3,000kg)교체
 - LPG탱크 시설 설치(5m×4m)
 - 가스배관공사(지중10m)
- (4) 신청인 의견
 - 대기오염 배출가스 기준 충족을 위해 교체보일러는 고효율 및 저녹스 인증을 받은 가스보일러로 선정하고 부대시설인 LPG저장 시설도 함께 설치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보류
 - 자료보완(시설물 안전성 등) 후 재검토

11. 진주성 내외 시굴조사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사적 제118호 「진주성」 내외에 시굴조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을 위한 문화재 보존대책을 강구하기 위함
 - '16년 15차 위원회('16.12.28.) 부결 : 문화재 보존 환경 저해 우려(유구 발굴 및 보존 방안 강구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진주성(사적 제118호 / 1963.01.21지정)
 - 소재지 : 경남 진주시 남성동 212-9 진주성
- (3) 신청내용<시굴조사>
 - 위치 : 경남 진주시 본성동 10-4 일원 157필지(문화재구역, 1, 3, 6구역)
 - 내용
 - 조사면적 : 25,028m²
 - 조사방법 : 시굴조사
- (4) 신청인 의견
 -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 강구를 위한 설계 기초 자료 확보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매장분과 검토대로 시행

12.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내 야외공연장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내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성 송학동 고분내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제119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야외공연장 설치>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13번길 50 일원(문화재구역)
 - 내용
 - W=20m, B=10m, H=7m 야외공연장 설치(막구조물)
- (4) 신청인 의견 : 도심속 사적공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또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친화공간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사적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고성 송학동 고분군과 연계되는 문화행사를 소화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림으로써 우리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및 가치 저해 우려

13. 남해 충렬사 내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사적 제233호 「남해 충렬사」 내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해 충렬사 내 야외공연장 막구조물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해 충렬사(사적 제233호 / 1973.06.11. 지정)
 - 소재지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350
- (3) 신청내용<막구조물 설치>
 - 위치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359(문화재구역)
 - 개요
 - 16000mm × 9895mm × 6710mm
- (4) 신청인 의견 : 이순신장군을 기리기 위하여 개최하는 기념행사와 음악회, 수병교대식 및 취타대 공연 등을 위하여 야외공연장을 설치코자 함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및 가치 저해 우려

14. 함안 말이산 고분군 내 고분전시관 건립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사적 제515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 내 고분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말이산 6호분의 1:1 재현전시로 아라가야의 특징적 고분구조와 봉토축조의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는 고분전시관을 건립
- '17년 5차 위원회('17.05.2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제515호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527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시설물 설치>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577번지(문화재구역)
 - 개요 : 전시관 건립 1동

지역, 지구	보전녹지지역, 사적 제 515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관)
건축규모	지상 1층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외부 마감	노출콘크리트
최고높이	3.00m
건축면적	952.18㎡
연면적	952.18㎡

(4) 신청인 의견

- 기존 박물관이나 고분군에서 보여줄 수 없는 고분의 유구 내부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관의 필요성 대두(2013 : 말이산고분군 종합정비기본계획)

- 발굴조사가 완료된 고분 중 말이산고분군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산6호분을 다시 발굴하여 그 위에 노출전시관을 건립하려 하였으나 고분군 경관저해의 사유로 말이산6호분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1:1 재현 전시관 건립으로 변경
- 말이산6호분 발굴조사 기관 및 지역 관계전문가·지역향토사단체들과 협의하여 가장 경관적 유해함이 없는 현재 위치(도항리 577번지) 선정
- 국가사적인 함안 말이산고분군의 경관에 조화로우면서 창의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높고 고분의 내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고분전시관 건립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6.02/문화재위원 ○○○, ○○○, ○○○)

- 현 계획중인 위치는 고분군의 경관유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 함안박물관과의 조화 및 동선연결에 최적의 지역으로 판단된다.
- 지표상 2.4m의 높이로 계획된 층고는 경관유지에 유리하며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상의 한계로 6호분의 모형재현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시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되겠지만, 전통적인 구조물 중심의 전시보다는 VR이나 영상을 최대한 활용함을 추진하고 싶으며, 발굴당시 보다는 축조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할 것을 추천한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할 것

15. 강화산성 내 도심진입부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내 도심진입부 정비 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내 보행공간 마련을 위해 정비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1964.06.10)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도심진입부 정비사업>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8-2(시점)~688(종점)(문화재구역)
 - 개요
 - 목적 : 보행로 개선 및 노후시설개선, 강화행렬도 이설
 - 내용 : 토공사(깎기:423m³, 쌓기 : 10m³, 사토 : 413m³), 배수공사(U형 측구 수로관 : 154m), 포장공사 및 부대공사(보도블럭: 1,001m²)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16. 부여 부소산성 내 경관조명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내 경관조명 추가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소산성 내 경관조명 추가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부소산성(사적 제5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일원
- (3) 신청내용<경관조명 추가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대상면적 : 1,022,558m²
 - 규모 : 조명등 452여개
 - 설치조명 : 전반조명(블라드, 가로등, 난간조명, 블라드), 연출조명(스텝등, 지중매입등, 투광폴, 수목등)
 - 사업기간 : '17. 5월 ~ '17. 11월
 - 기타사항(18시 이후 이용객 통계 관련)
 - '16년 기준, 주간 54만명(연간)/야간 200여명(1일), 400여명(주말)
 - 경관조명 추가 설치 후, 사비야행, 부여 시티투어(야간운행), 야간관광코스(정림사지, 궁남지, 능산리 고분군, 나성 연계) 개발 등을 통해 주간 방문객이 야간에도 체류하는 등 야간에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야간, 총 13만명 추가 예상)

라. 참고사항

(1) 자문위원의견('17.05.12/문화재위원 ○○○, ○○○ 소장)

- 야간의 관람객 통계에 대한 조사 필요
- 부소산성의 경우 시민들이 야간에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보행자 안전과 함께 원경에서 보일 수 있는 정자의 존재감을 은은하게 드러내는 정도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 지중매입등의 경우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IP rating 등이 확실한 제품으로 선정하고 눈부심을 고려하여 루버 등의 악세서리를 반드시 장착
- 문라이트 발광형 바닥 설치조명의 경우 파손과 오염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체, 외함투광조명은 거대하여 눈에 띄므로 계획 수정, 등산로 산지조명은 바닥에서 쏘아 올리는 조명의 경우 관리 문제가 있으므로 넓은 배광으로 은은하게 할 필요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조명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17. 부여 능산리 고분군 내 송모전 건립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내 송모전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능산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에 백제6대왕 송모전 건립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 '16년 7차 위원회('16.07.13.)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6년 8차 위원회('16.08.10.) 부결 : 문화재 가치 훼손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능산리 고분군 (사적 제14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5 일원
- (3) 신청내용<백제 6대왕 송모전 건립>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5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건립 목적
 - 1950년부터 지역 주민에 의해 백제사비6대왕제 거행(임시천막 설치)
 - * 6대왕(총7명) : 온조왕, 성왕, 위덕왕, 해왕, 법왕, 무왕, 의자왕
 - 추모시설인 송모전 건립으로 제향공간 마련, 사적의 역사적 가치 증진, 관람객 체험관으로 활용
 - 건립 위치 및 규모

이전신청('16.7.13 /'16.08.10)		금회신청(안)	
1 안	위치: 부여읍 능산리375-2(고분군 주차장 서북편) 규모(2동) : 정전 107.73㎡/전사청 24.65㎡	1 안	위치 : 좌동 규모(2동) : 정전 107.73㎡/전사청 24.65㎡
2 안	위치 :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370-1 일원 (고분군 주차장 동북편) 규모(3동) : 정전 140.64㎡/제기고·전사청 92.3㎡/송명전 20.76㎡	2 안	위치 : 능산리사지 강당지 규모(4동) : 강당 511.87㎡/서익사 143.37㎡/동익사 77.87㎡

라. 참고사항

(1) 자문회의의견('17.01.21/○○○, ○○○, ○○○, ○○○)

- 능사 자체가 제의기능이 있었을 것이므로 제의기능을 회복하는 복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건물은 강당지 전체를 복원하는 것이 합당하며 건물구법은 시간을 가지고 고증하는 것이 필요함

(2) 자문회의의견('17.01.17/○○○, ○○○, ○○○, ○○○, ○○○)

- 능산리 고분군에 인접된 능산리사지는 성왕 사후 위덕왕에 의하여 건립된 사찰로 제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음
- 따라서 별도의 위치에 승모전을 건립하는 것 보다는 능산리사지 내 강당지가 1건물 2실의 동대자유적과 평면형태가 유사하며, 제의시설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고증심화연구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바람직함

(3) 현지조사의견('16.07.27/문화재위원 ○○○)

- 본 사업구역은 문화재구역이며, 승모전 건립 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이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백제고분군과 관련된 사적 영역이어서 조선시대 유교적 관념의 승모전 건립은 문화재의 성격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함

(4) 현지조사의견('16.07.27/문화재위원 ○○○)

- 문화재구역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으로. 원 지형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고분군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지역의 안쪽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그러나 공주에 이미 유사한 상태에서 허가하였으므로 형평상 불허하기는 어려움
- 그러므로 본 건은 백제의 제례, 묘제, 건축물의 양식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5) 현지조사의견('16.07.29/문화재위원 ○○○, ○○○)

- 승모전 건립부지로는 제시된 2개의 안 중에서 2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다음 내용을 검토하여 부지선정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있음
 - 문화재구역임을 고려하여 동고분군 추가발굴지역과 간섭이 없는 지점인지 검토하고 시발굴이 선행되어야 함
 - 주변 마을 주민의 민원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음

(6) 관계전문가 의견('16.07.07/문화재위원 ○○○)

- 건립 위치는 2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왕릉권역이 인접해 있으므로 고고학적으로 의미 있는 유적의 잔존여부를 면밀히 고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7) 관리단체 의견

- 현재 부여읍 능산리지역에는 백제 사비시기 왕족의 무덤이 능산리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백제문화제 기간 중 백제 사비6대왕제가 거행되고 있음
- 하지만 1950년 이후부터 매년 대왕제를 거행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제례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임시시설물(임시텐트)를 설치하여 제례를 실시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임
- 이에 따라 별도의 제향공간을 마련하여 가치를 높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도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송모전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18. 공주 석장리 유적 내 관람객 탐방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내 어린이 관람객 위한 시설 및 데크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주 석장리 유적 내 관람객의 체험공간으로 조성된 영역의 활용도 제고 및 편의를 위한 체험시설 및 데크를 설치하고자 신청함
- '16년 15차 위원회('16.12.28.) 부결 : 문화재경관저해 우려
- '17년 2차 위원회('17.02.15.) 부결 : 문화재경관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석장리 유적(사적 제334호 / 1990.10.30. 지정)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산15번지
- (3) 신청내용<탐방시설 설치>
 -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산15번지(문화재구역)
 - 발굴체험장 후면 임야
 - 사업목적
 - 공주 석장리 유적 내 문화재 경관을 고려하여 수목으로 차폐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 관람객의 유적 관람 동선 확대를 위한 시설 설치를 통하여 공간 내 흥미유발 및 활용도 제고
 - 사업내용

'16.12.28 제출안	'16. 2.15 제출안	금회(안)
- 탐방로 : 폭 1.5m, 길이 110 m - 데크로드 : 폭 1.8 m, 길이 50m - 데크(2기) : 3.3m×4.8m / 4.8m×4.8m - 미끄럼틀 : 폭 0.55m, 길이 70.9m	- 데크(1기) : 2.9m×4.7m - 미끄럼틀 : 폭 0.6m, 길이 54m	- 데크(1기) : 2.9m×4.7m - 미끄럼틀 : 폭 0.6m, 길이 43m

라. 참고사항

(1) 관리단체 의견

- 공주 석장리 유적지 내 석장리 박물관은 세계유산 관람 및 구석기 축제기간 중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박물관 외부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음
- 본 사업은 수목으로 차폐된 공간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 석장리 유적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관람객들에게 체험과 흥미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현지자문('17.01.12 ○○○ 위원/'17.01.10. ○○○ 위원)을 통하여 설치물 최소화 및 놀이시설 재료 및 외관 조정함('17.02.15 제출시)
 - ※ 구석기 유적의 시설과 조화 가능하고, 사용 시 위험방지를 위하여 재설계 하여 제출함('17.02.15. 문화재위원회 의견 반영)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안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

19. 공주 수촌리 고분군 내 화장실 신축 및 식생정비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내에 관람객 화장실 신축 및 수목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수촌리 고분군 내 관람객 화장실을 설치하고, 식생 및 조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관람 경관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17년 4차 위원회('17.04.12.)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제460호 / 2005.03.03 지정)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 일원
- (3) 신청내용<화장실 신축 및 식생정비>
 - 위치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화장실 신축(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21-8, 체험관 옆)

	기존('17.4.12)	금회(안)
위치	체험관 시설 영역(10미터 이격)	좌동(체험관 인접)
대지면적/건축면적	6,923㎡ / 69.2㎡	6,923㎡ / 68.92㎡
건축규모	지상 1층(건물높이 4.0m)	지상 1층(건물높이 3.9m)
구조	철근콘크리트	좌동

- 식생정비

	기존('17.4.12)	금회(안)
식생 주요내용	- 지형복원 및 잔디공간 조성, - 아카시아·은행나무·밤나무·참나무 등 제거 후 송림 또는 참나무숲 조성	- 지형복원 및 습지대로 유지, 일부 잔디식재 - 좌동
시설물	관람객 파고라 설치(2개)	삭제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6.01/문화재위원 ○○○)

- 현재 제시된 화장실 대상지(A)는 현지에 살펴봤을 때 1구역 근처에 계획되는 것보다는 기존설비 인프라 활용 및 체험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됨.
- 다만 대상지 현황이 고분(1구역)으로 이어지는 접근로의 좌측에 있어 좌측으로 굽은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탐방객의 시야에 신축건물이 거슬린다고 생각됨
- 대상지 인근에 체험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건물과 가까운 곳을 고려해볼 수 있음. 즉 이미 체험관 건물이 세워져 있어 인접해서 건축물이 신축되어도 어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화장실이 위치할 경우 출입문이 탐방객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계획할 필요 있음
- 현재 제시된 장소 및 새롭게 검토된 대상지에 건축계획을 할 경우 공통적으로 대지의 형상과 이동경로 및 시각적 경관을 고려하여 육면체 이외의 곡선을 적용하여 평면이 계획되는 것도 적절하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2) 현지조사의견('17.06.01/민속분과 문화재위원 ○○○)

- 수목의 존치, 제거 여부 등 판단은 개인적 취향 등 주관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이 필연적이나, 해당 지역의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함
- 이러한 맥락에서 메타세콰이어 등 일부 수목은 일반 공원 지역이라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자원이나 고분군이 위치한 장소의 특수성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판단이 필요함
- 제시된 식생 정비계획이 비교적 타당하게 작성되었음
- 사업대상지의 규모를 감안할 때, 종합적인 수목정비 계획안 마련 후 단계별, 장소별로 시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3) 자치단체 의견

- 연차발굴로 인하여 유적에 대한 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람직한 관람환경 조성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 발굴조사가 '17년 마무리될 예정이므로, 수촌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에 관람동선에 적합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식생정비를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조성이 필요한 실정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20. 경주 동궁과 월지 내 임시주차장 사용기간 연장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내 임시주차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동궁과 월지 내 임시 주차장 사용기간 연장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2년 4차 위원회('12.04.18.) 조건부가결 : 3년 이내 원상회복 필요
 - '15년 6차 위원회('15.06.10.) 조건부가결 : 사용기간 2년에 한해 연장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26 일원
- (3) 신청내용<임시 주차장 사용기간 연장>
 -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53-2번지 외 9필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12. 4월 조성하여 5년간 사용해 온 임시 주차장의 사용기간 추가 연장 ('17.6월~'19.12월/2년 7개월)

※ 임시 주차장 조성 현황(10,400㎡, 소형 180면)
- 성토(4,624㎡, H = 0.3m~0.7m) 후 쇄석 다짐(963㎡, H = 9cm)
- 차량 진출입로 설치구간 하부에 하수관(콘크리트흡관 ø600 L=15m, ø800 L=10m) 매설
- 토사측구 배수로 설치 (L=87.0m, 400×300)

(4) 신청인 의견

- 기존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한 불편 초래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편안한 관람문화를 위해 임시주차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5.05.06/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동궁과 월지 입구에 임시로 설치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2012.4월 3년간 한시적으로 허가받아 사용해온 임시주차장의 사용기간을 2020년5월 15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남측에 시행되고 있는 발굴조사 기간이 장기간에 걸친다고는 하나, 기존 허가받은 기간보다 훨씬 긴 중기간에 걸친 5년을 허가하기에는 동궁과 월지의 지정 구역 내부가 상실화된 주차장으로 인식될 염려가 있어, 기존 범위 이하인 3년 이내에서 허가하고 향후 발굴 추이에 따라 연장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12.04.12/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 본 건은 경주 동궁과 월지입구에서 볼 때, 동측의 공터에 10,400m² 규모의 소형 주차장 전용(180면)을 설치하기 위하여 0.3~0.7m를 성토하고 쇄석으로 마감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재 관람객에 의한 교통 체증을 생각할 때 기간을 정하여 허용하고 종합적인 검토 하에 주차장을 이전 한다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21. 경주 남산 일원 내 남산샘터 음수대 상부 보호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남산샘터 음수대 상부 보호시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내 남산샘터 음수대 상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7년 3차 위원회('17.03.07.)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1985.02.2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산2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남산샘터 음수대 상부 보호시설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32-1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구분	'17.3월(부결)	금회(안)	비고
연면적	16㎡	4㎡	
구조	한식기와 사각 정자형, 목조, 전통기와	사각 아스팔트 루핑형, 목구조	
규모	1동, 지상1층, 4.2m	1동, 지상1층, 2.7m	

- (4) 신청인 의견
 - 남산 샘터(먹는 물 공동시설)를 개선하여 양질의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음수대 상부 보호시설(한식기와 사각 정자형)을 설치하여 이용자 및 음수대 주변 관리 불편해소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22. 경주 남산 일원 내 통일전 주차장 화장실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통일전 주차장에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구역 내 통일전 주차장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7년 4차 위원회('17.04.12.) 부결 : 규모와 디자인에 대한 재검토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산2번지 외 1,294필지
- (3) 신청내용<통일전 주차장 화장실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남산동 936-7번지 외 2필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구분	'17.4월(부결)	금회	비고
연면적	113.4㎡	90.72㎡	
구조	철근콘크리트, 한식골기와 맞배지붕	철근콘크리트, 한식골기와 맞배지붕	
규모	1동, 지상1층, 5.606m	1동, 지상1층, 6.64m	

(4) 신청인 의견

- 경주 남산(동남산) 및 서출지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가 시급함.
- 관광객의 위생 편의와 사적지 주변의 경관 보호

라. 참고자료

- 통일전 주차장 및 기존화장실 현황
 - 통일전 주차장 : 면적 16,529㎡, 주차대수 264대
 - 기존 화장실
 - 규모 / 설치년도 : 면적 35.37㎡ / 1997년
 - 시설현황 : 대변기(동양식) 5개 (남2, 여3), 소변기 4개
 - ※ 장애인 및 어린이 화장실 없음
- 관광객 현황
 - 남산 지구 전체 등산객 수 : 360,908명(2016년 기준-경주국립공원 통계자료)
 - 동남산 입구 : 48,610명, 월평균 주말 관광객 수 3,000명 정도
 - 서출지 및 통일전 관람객 수 : 330,000명 정도 (2016년 기준)
 - 월평균 주말 관광객 수 : 17,000명정도
 - ※ 동남산 등산객 및 서출지, 통일전 관람객 수 : 월평균 주말 20,000명 정도 이용
-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 역사문화미관지구
 - 제53조(건축물의 형태) 제1항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한국 고유의 한옥 건축물 모양으로 하여야 한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위치는 전문가 검토를 받아 조정할 것

23. 광주 조선백자 요지 내외 도로 확포장 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내외에 도로(시도 35호선)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 광주시장의 시도35호선 도로에 대하여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7년 5차 위원회('17.05.2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72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도로(시도35호선) 확포장 공사>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77-2 외 3필지(문화재구역, 1구역)
 - 사업내용

구분	면적·길이	문화재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비고
편입면적	275㎡	163㎡	112㎡	
아스콘포장	125㎡	63㎡	62㎡	
포장길이	68m	34m	34m	
가드레일	67m	33m	34m	
역L형옹벽	68m	34m	34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5.31/문화재위원 ○○○)

- 도로의 폭이나 선형(지나친 곡선)에 비해 차량 소통이 많아 개선이 절실함
- 현재 도로의 고저차가 심하여 추락시 치명적 위험초래 가능, 겨울철 도로 결빙시 추락위험
- 도로폭도 넓히고 선형도 직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점차적으로 도로 확대가 요구되는 지역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24. 남한산성 행궁 내 수목식재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내 수목 식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한산성 행궁 내에 수목 식재(매자나무)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 행궁(사적 제480호 / 2007.06.08.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로 784-29 외 일원
- (3) 신청내용<수목 식재>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935-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식재수종 : 매자나무
 - 식재수량 : 620주
 - 식재면적 : 63.63m²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25. 부여 능산리 고분군 등 내 경관조명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및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내 경관조명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능산리 고분군 및 부여 나성 내 경관조명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17년 5차 위원회('17.05.24) 보류 : 18시 이후 이용객 통계 확인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능산리 고분군(사적 제14호 / 1963.01.21. 지정),
부여 나성(사적제58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5번지 일원, 염창리 565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경관조명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5번지 일원 및 염창리 565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대상면적 : 268,756m²
 - 규모 : 조명등 584여개
 - 설치조명 : 전반조명(볼라드, 가로등, 비컨), 연출조명(고분투과등, 절터 스텝등, 지중매입등, 투광폴, 수목등, 박물관 투광등), 성곽조명 등
 - 사업기간 : '17. 5월 ~ '17. 11월
 - 기타사항(18시 이후 이용객 통계 관련)
 - 경관조명 설치 후 야간개발 실시예정(현재 야간 이용객 관련 통계 없음)
 - '16년 기준 주간 관광객은 6만여명임
 - 경관조명 설치 및 야간개방 이후 사비야행, 부여 시티투어(야간운행) 등을 통해 부여 연간 방문객의 5%(약 4만명)의 관광객이 주간 및 야간에 추가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 ※ 경주 동궁과 월지(23시까지 개방)의 경우 주간(39만명)보다 야간(91만명) 관람객이 월등히 많음

라. 참고사항

(1) 자문위원의견('17.05.12/문화재위원 ○○○, ○○○ 소장)

-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목적 및 컨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체계화할 필요 있음(관람객의 야간접근성이 좋지 않고, 현재 개방시간이 18시이므로 조명 설치로 인한 이용객 증가예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 필요)
- 고보 조명 등이 고분의 고즈넉한 느낌을 해칠 수 있으므로, 설치조명의 수량을 최소화하고, 조명 위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계획된 플라드는 나무재질과 투박한 모양으로 인하여 주간에도 사적의 경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색상과 규모가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하여 광원의 높이를 높여 바닥에 떨어지는 빛의 면적을 넓히고, 수량을 대폭 축소할 필요성 있음
- 수목조명 수량이 과다하므로 대폭 축소하고, 바닥의 문양연출조명을 전면 배제할 필요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부여 나성에만 조명을 설치할 것

26. 부여 군수리 사지 내 저온저장고 및 컨테이너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44호 「부여 군수리 사지」 내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군수리 사지 내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하여 신청함
- '17년 5차 위원회('17.05.24) 부결 : 문화재 경관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군수리 사지(사적 제44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19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저온저장고 및 컨테이너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85-7(문화재구역)
 - 사업목적 : 농산물 보관
 - 사업내용
 - 대지면적(2,248㎡)

	기존안('17.5.24)	금회(안)
수량	2동(저온저장고 1동/컨테이너 1동)	좌동
규모	(저온저장고) 5.0 × 3.0 × 2.5m (컨테이너) 6.0 × 3.0 × 2.5m	(저온저장고) 5.16 × 3.2 × 2.5m (컨테이너) 4.0 × 3.0 × 2.5

라. 참고사항

(1) 관리단체의견

- 본 현상변경 허가신청 건의 사업대상지는 문화재지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굴착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 없이 농산물 저장 및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임시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서 문화재 훼손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설치될 가설건축물의 높이 또한 3미터로 경관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

27. 고양 행주산성 주변 복선전철 터널 개설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주변의 복선전철 (대곡~소사 구간) 민간투자시설 사업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부광역철도에서 고양 행주산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대곡~소사 복선전철 터널 개설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행주산성(사적 제56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대곡~소사 복선전철 터널 개설>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155-1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m 이격/1, 2, 4구역)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2016~2021년)
 - 사업구간 : 18.3km(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L=약 1,525m/지하40m)
 - 폭원 : 지름 7.7m, 2개소(복선전철)
 - 문화재보호방안 : 해당 구간 굴착시 진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터널굴착공법 : 쉘드공법으로 쉘드를 사용하여 지반의 붕괴를 방지하고 그것으로 보호된 공간내 전면을 굴착하고 후부에서는 복공작업을 반복하여 쉘드를 점차 전진시키는 터널굴착공사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28. 서울 한양도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등 일대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46-1892(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3.4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30.6㎡
 - 건축면적 : 99.15㎡
 - 연면적 : 360.85㎡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3층(높이 11.9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7.06.09/문화재위원 ○○○)
 - 상기 건물 신축 부지는 한양도성 보호구역으로부터 33.4m 이격된 사유지임.
 - 건물의 신축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건물의 높이와 외관이 성곽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어울리는지는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신축높이 과다)
 - 신축 건물 높이는 성곽높이 보다 아래로 할 것

29. 하동읍성 주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하동군 소재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주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하동읍성 주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하동읍성(사적 제453호 / 2004.05.31 지정)
 - 소재지 :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15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태양광발전소 설치>
 - 위치 :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70{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3m 이격 /4구역(하동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내용
 - 부지면적 : 25,898㎡
 - 건축면적 : 14,000㎡
 - 건물 : 컨테이너 태양광인버터실(관리동)
 - 최대높이 : 2.5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30. 창원 진동리 유적 주변 도로개설 연장(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제472호 「창원 진동리 유적」 주변에 도로개설 연장을 위하여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창원 진동리 유적 주변에 도로개설을 위하여 기 허가사항의 구간을 연장하고자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15년 4차 위원회('15.04.08.) 조건부 가결 : 시발굴 조사 선행, 도로폭은 문화재구역 부분을 축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원 진동리 유적(사적 제472호 / 2006.08.29 지정)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230번지
- (3) 신청내용<도로개설 연장>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513-14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1구역(개별심의)}
 - 내용

구분	길이	너비
당초허가사항	200m	8m
변경허가사항(구간연장)	62m	10m

- (4) 신청인 의견 : 도시계획도로(소로2-283호선, 소로1-165호선)개설에 따름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31. 강화 참성단 주변 관람대 구조물 설치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주변 시설물 설치를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참성단 주변에 참성단 보호를 위한 하늘전망대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6년 15차 위원회('16.12.28)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7년 1차 위원회('17.01.11)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이재범, 고혜령, 류제헌 위원 현장점검실시('17.01.23.)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참성단(사적 제136호 / 1964.07.11.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흥왕리 산42-1
- (3) 신청내용<하늘전망대 설치>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문산리 산5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85m이격 /1구역)
 - 사업내용

구분		기존현황	이전신청 ('17.1.11)	금회신청	비고
하늘전망대 (헬기장)	지름	8m	20m	18m	헬기착륙 최소규모
	구조	철근콘크리트	목재데크,H빔	좌동	동바리마감
산불초소	제원	1.2m	20m	좌동	기존초소위치이동

(4) 신청인 의견

- 강화 참성단은 폐쇄와 민원에 의한 개방을 반복하고 있는 문화재로 적은 면적에 많은 인원이 몰려 이완이 진행되고 있어, 참성단을 보호하기 위함. 또한 낙상사고 등이 매년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헬기장 확장도 부수적으로 고려하였음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32. 강화외성 주변 매화마름 서식지 내 시설물 설치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매화마름 서식지 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외성 주변 멸종위기생물 2급인 매화마름 서식지 내 노후된 탐방시설을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제452호 / 2003.10.25.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 (3) 신청내용<시설물 설치>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초지리 560-1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5m 이격 /1구역(개별심의), 2구역(평지붕5m, 경사지붕7.5m)}
 - 개요
 - 대상면적: 342.4m²
 - 시설물설치내용

구분	명칭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철거	가드레일 해체후 재설치	H800	m	158.0	
	별개제근		m ²	485.5	
	현황데크 철거		m ²	126.9	
시설물	매화마름 탐방로	A=331.4m ²	식	1	
	도로안내판	H3000	개소	1	
	종합안내판	2300×2220×H3000	개소	1	
	생태해설판	1200×750×1800	개소	1	
	금지안내판	700×1200×H1900	개소	1	
우수	잔디수로	W400	m	159	
	집수정	600×600	개소	4	
	우수관	D300	m	18	

(4) 신청인 의견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생물 2급인 매화마름 서식지가 2008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으나 노후된 탐방시설로 인하여 경관이 불량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함. 이에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홍보하여 생태관광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자문의견(문화재위원 ○○○)

- 강화외성 외곽에서 20m 이격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2구역에 총 연장 약 130m, 폭1.2m 보행데크와 약10m*6m 관찰데크,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임. 본 사업으로 문화재경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진행하기 바람.
- 데크는 가능한 한 1구역이 아닌 2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내판은 설치 개소와 크기, 높이를 최소화하고 투명재질(아크릴 등)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33. 구미 낙산리 고분군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사적 제336호 「구미 낙산리 고분군」 주변에 도로(203호) 확포장 공사 등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미 낙산리 고분군 주변에 도로(203호) 확포장, 한전주 이설 등을 하고자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구미 낙산리 고분군(사적 제336호),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보물 제469호)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산98-4, 837-4번지

(3) 신청내용<낙산리도(203호) 확포장 공사 등>

○ 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305-3번지 외 96필지{고분군으로부터 9m, 삼층석탑으로부터 130m 이격/1구역(개별심의), 2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심의}}

○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 B=6.5m, L=1,068m

· 흙깎기 1,158m³, 흙쌓기 3,126m³, 순성토 971m³, 콘크리트포장깨기 914m³, 아스팔트포장깨기 224m³, 무근콘크리트깨기 71m³

· 우수관(D300mm) L=29m, 우수관(D450mm) L=874m, 우수관(D600mm) L=106m, 우수관(D800mm) L=88m, 수로관(0.4*0.4) L=421m, L형 측구 L=1,188m

· 석축 헐기 및 쌓기(H=1.5m) L=42m

· 아스팔트포장(t=15cm) A=6,892m², 차선도색

· 한전주 이설 25주

(4) 신청인 의견 :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34.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1-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6, 115-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6m 이격 /2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1m이하)}
 - 사업내용

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531.0㎡	
지 목	대, 구거	
건축면적	209.04㎡	건폐율 39.37%
연 면 적	701.72㎡	용적률 99.86%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1개동-8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17.7m	경사지붕
주차대수	8대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35.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등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다세대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1-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5-3, 115-1, 115-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6m 이격/2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1m이하)}
 - 사업내용

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531㎡	
지 목	대, 창고용지	
건축면적	446.34㎡	건폐율 37.20%
연 면 적	1,723.08㎡	용적률 93.73%
규 모	지하2층~지상4층	1개동-8세대,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지상4층	1개동-8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18.7m	경사지붕
주차대수	17대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36.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1-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5-1, 115-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6m 이격 / 2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1m이하)}
 - 사업내용

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611㎡	
지 목	창고용지, 대	
건축면적	237.30㎡	건폐율 38.84%
연 면 적	793.30㎡	용적률 96.63%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1개동-8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18.7m	경사지붕
주차대수	8대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37.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1-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5-1, 11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m 이격 /2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1m이하)}
 - 사업내용

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618㎡	
지 목	창고용지, 대	
건축면적	237.30㎡	건폐율 38.40%
연 면 적	793.05㎡	용적률 95.55%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1개동-8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17.7m	경사지붕
주차대수	8대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38.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0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1-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5-1, 117, 115-5, 115-3, 11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m 이격/2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1m이하)}
 - 사업내용

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1271m ²	
지 목	창고용지, 구거, 대	
건축면적	446.48m ²	건폐율 35.13%
연 면 적	1,568.88m ²	용적률 91.37%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1개동-8세대
	지하1층~지상4층	1개동-8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18.7m	경사지붕
주차대수	16대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39.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주변에 단독주택 3개동을 신축하고자 허가 신청한 사항임
 - '17년 1차 위원회('17.01.11.)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7년 2차 위원회('17.02.15.)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호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 (3) 신청내용<단독주택신축>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16, 산16-6(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대지/신청면적:3,690㎡/2,143㎡

구분	2017. 2 부결		2017. 6 신청	
	건축면적	높이	건축면적	높이
1동	64.65㎡	5m	71㎡	5.2m
2동	96.40㎡	5.625m	114.66㎡	5.6m
3동	96.40㎡	5.625m	114.66㎡	5.6m

- 철근콘크리트
- 주차장 : 옥외 자주식 3대
- 오수처리시설(15인조), 석축(총길이=268, H=1~4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1.23/문화재위원 ○○○)

- 강화산성에서 260m정도 거리에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로 신축부지 보다 산성에서 이격된 지점에 보존구역이 있어 보존구역 보다도 산성에 근접된 입지적인 조건이며, 신축부지 조성시 성·절토가 이루어지며 2중의 축대가 형성되어 주변 경관을 훼손시키게 됨으로 불가함

(2) 현지조사의견('17.01.23/문화재위원 ○○○, ○○○, ○○○)

- 아래쪽 1동은 신축허가 가능함
- 산성으로부터 260m이격된 거리의2동은 산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허가 함이 타당함

(3) 현지조사의견('17.01.23/문화재위원 ○○○)

- 2동의 위치를 지형도 및 실제 확인 결과 산성이 보이지 않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40. 강화 외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외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제452호 / 2003.10.25.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증축(음식점)>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319-4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138m²
- 철거건물 : 총2개동(436.30m²)
- 건축면적/연면적 : 820.44m²/1,211.94m²
- 건축증축

단위(m²)

층별	용도	면적			비고
		기존	철거	증축	
1층	근린생활(음식점)	326.70(717.24)	64.8	103.2	1/2만 본인소유
2층	근린생활(음식점)	-	-	391.5	
합계		326.70	64.8	494.7	

- 건축물의 최고높이 : 2층(5.3m→7.9m, 증 2.6m)

(4) 신청인 의견

- 위 신청지는 강화군 신정리 장어마을에 위치한 식당으로 80년대부터 운영한 원조식당으로 주방과 식재창고로 사용 중인 건물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음
- 강화 외성(가리산 돈대) 문화재 복원을 위하여 2016년 문화재구역으로 편입한 지번에 위치한 상기 주방과 식재창고를 매수협의 중에 있음. 주방이 소멸될 시 영업을 연속할 수 없어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신청하는 사항임
- 해당신청지의 경우 2017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재구역 매수에 따라 기존 시설의 주방 및 창고의 소멸에 따른 증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건물과 문화재 복원 사업 공간에 조화로운 화단과 나들길(조경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5.19/문화재위원 ○○○, ○○○)

- 상기 신청안은 보상협의를 연관되어 장어집을 2층으로 증축하는 것임
- 필요상 2층으로의 증축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한옥구조의 형태를 지양하고 높이를 더 낮게 해야함
- 또한 시설물 철거 후 뒷공간 활용계획도 있어야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41.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에 기존건물(축사) 철거 후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9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523-1 외 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80m 이격/1구역(개별심의)}
 - 개요 : 2동(각2층구조)
 - 건축면적/연면적 : 201.54m²/196.04m²

동별	구분	용도	면적	높이
신축1동	1층	단독주택	75.48m ²	7.96m
	2층		22.24m ²	
신축2동	1층		75.48m ²	
	2층		22.24m ²	

- 축사2동 철거(268m²)

동별	구분	용도	면적	높이
축사1동	1층	동식물관련시설관리사	100.00m ²	최고높이6.2m
축사2동	1층	동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168.00m ²	

- 옹벽설치 : H=1.0m, L=53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42. 경희궁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희궁지 주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2-1
- (3) 신청내용<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2-64{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발전용량 : 50kW
 - 설치면적 : 400m²
 - * 모듈 구조물(1개) 규모
 - 가로 1,994mm×세로1,000mm×최고높이600mm(최저높이300mm)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43. 울주 검단리 유적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332호 「울주 검단리 유적」 주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주 검단리 유적 주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임
 - “주기장 설치” 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득함('15.11월)
 - “자원순환관련시설(야적장) 신축” 건(허가사항 변경허가)으로 사적분과 위원회('16.2.17) 보류(현지조사 후 재검토), 사적분과 소위원회('16.3.23) 가결
 - 허가사항 : 450㎡(150㎡×3동)/최고 3m
 - “자원순환관련시설(야적장) 기반시설 보강 공사” 건(허가사항 변경허가)으로 사적분과 위원회('16.12.28.) 가결
 - 허가사항(시굴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 .. 법면설치(잔디) : 도로부분면적 380㎡, 인접경계부분면적 300㎡, 높이 1.2m
 - .. 울타리설치 : 높이 2.1m/길이 96m
 - .. 진입로: 6m폭 확장/길이 90m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주 검단리 유적(사적 제332호 / 1990.08.21. 지정)
 -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산62번지 외
- (3) 신청내용<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555, 555-1 등 2필지{문화재구역으로 부터 130m 이격/1구역(개별심의)}

○ 건축규모

구분	기존 허가사항('16.12월)	금회 신청사항('17.6월)	비고
대지면적	8,890m ²	4,860m ²	
건축면적	300m ² (150m ² 2동)/3m	총 788m ² 140m ² (10m×14m), 648m ² (12m×27m)	증 488m ²
규모/높이	1층(2동)/3m	1층(1동)/3m 1층(2동)/6.3m	증 3.3m(증 1동)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7.06.05/전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 상기 문화재의 관리기준은 확장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문화재와 접한 본 사업구역은 기존 유지해오던 관리기준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으며, 기 허가 해준 위치 규모(높이, 넓이)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적 제332호 울주 검단리 유적은 사적으로 지정된 구역밖으로 청동기 시대 유구가 확장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향후 문화재 구역의 확대도 필요한 점과 상기 사업구역에서의 허가 신청내용이 기 허가 내용보다 크게 확대 되고 변형되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됨
- (2) 현지조사의견('16.12.20/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도로·울타리의 설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법면의 잔디식재에 있어서는 사적지인 “검단리 유적” 방향으로의 법면 잔디 식재는 형질변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3) (기존 허가시)현지조사의견('16.03.04/문화재위원 ○○○)
 - 상기 사업구역은 1구역이며, 문화재 이격거리는 100m임
 - 그러나 사업구역은 4단계로 단이 저서 문화재로부터 고도 차이가 많이 나며 인근 지구는 대부분 공장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임
 -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고 건축 입지도 문화재로부터 떨어지게 조정하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주변 개발정도와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됨
- (4) 유사사례
 - 울주 검단리유적 주변 공장신축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08.11월) 취소소송에서 우리 청 승소('11.2월/2010두24456)
 - 신청내용 : 공장신축(2동, 지상1층, 대지면적 7,258m², 건축면적/연면적 1,090m²/1,090m², 최고높이 6.5m)

- 울주 김단리유적 주변 소매점신축 허가신청(○○○) 불허처분('15.5월)
 - 신청내용 : 소매점신축(2동, 지상1층, 대지면적 8,366㎡, 건축면적/연면적 986.4㎡/986.4㎡, 최고높이 6.6m)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44. 울주 검단리 유적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332호 「울주 검단리 유적」 주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주 검단리 유적 주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임
 - “주기장 설치” 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득함('15.11월)
 - “자원순환관련시설(야적장) 신축” 건(허가사항 변경허가)으로 사적분과 위원회('16.2.17) 보류(현지조사 후 재검토), 사적분과 소위원회('16.3.23) 가결
 - 허가사항 : 450㎡(150㎡×3동)/최고 3m
 - “자원순환관련시설(야적장) 기반시설 보강 공사” 건(허가사항 변경허가)으로 사적분과 위원회('16.12.28.) 가결
 - 허가사항(시굴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 .. 법면설치(잔디) : 도로부분면적 380㎡, 인접경계부분면적 300㎡, 높이 1.2m
 - .. 울타리설치 : 높이 2.1m/길이 96m
 - .. 진입로: 6m폭 확장/길이 90m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주 검단리 유적(사적 제332호 / 1990.08.21. 지정)
 -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산62번지 외
- (3) 신청내용<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554, 553-1, 553-3 등 3필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1구역(개별심의)}

○ 건축규모

구분	기존 허가사항('16.12월)	금회 신청사항('17.6월)	비고
대지면적	8,890m ²	4,030m ²	
건축면적	150m ²	324m ² (12m×27m)	증 174m ²
규모/높이	1층/3m	1층/6.3m	증 3.3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7.06.05/전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 상기 허가 신청건은 기 허가해준 시설물의 위치·규모(면적, 높이 등)를 크게하여 변경한 내용으로서 사적 제332호 울주 검단리 유적에 인접하고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됨
 - 상기 문화재의 인근을 지나는 확장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도로와 문화재 사이의 구역인 본 사업구간은 기 허가된 내용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2) 유사사례
 - 울주 검단리유적 주변 공장신축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08.11월) 취소소송에서 우리 청 승소('11.2월/2010두24456)
 - 신청내용 : 공장신축(2동, 지상1층, 대지면적 7,258m², 건축면적/연면적 1,090m²/1,090m², 최고높이 6.5m)
 - 울주 검단리유적 주변 소매점신축 허가신청(○○○) 불허처분('15.5월)
 - 신청내용 : 소매점신축(2동, 지상1층, 대지면적 8,366m², 건축면적/연면적 986.4m²/986.4m², 최고높이 6.6m)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45. 여수 충민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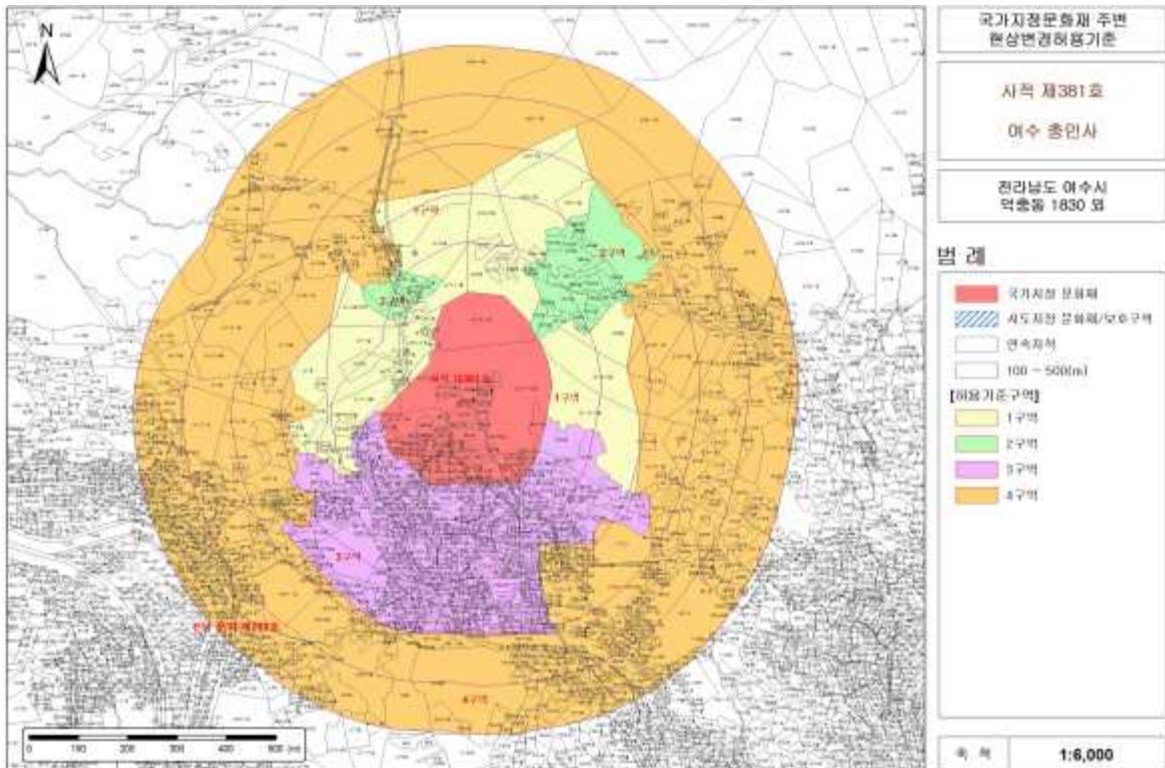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사적 제381호 「여수 충민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수 충민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유형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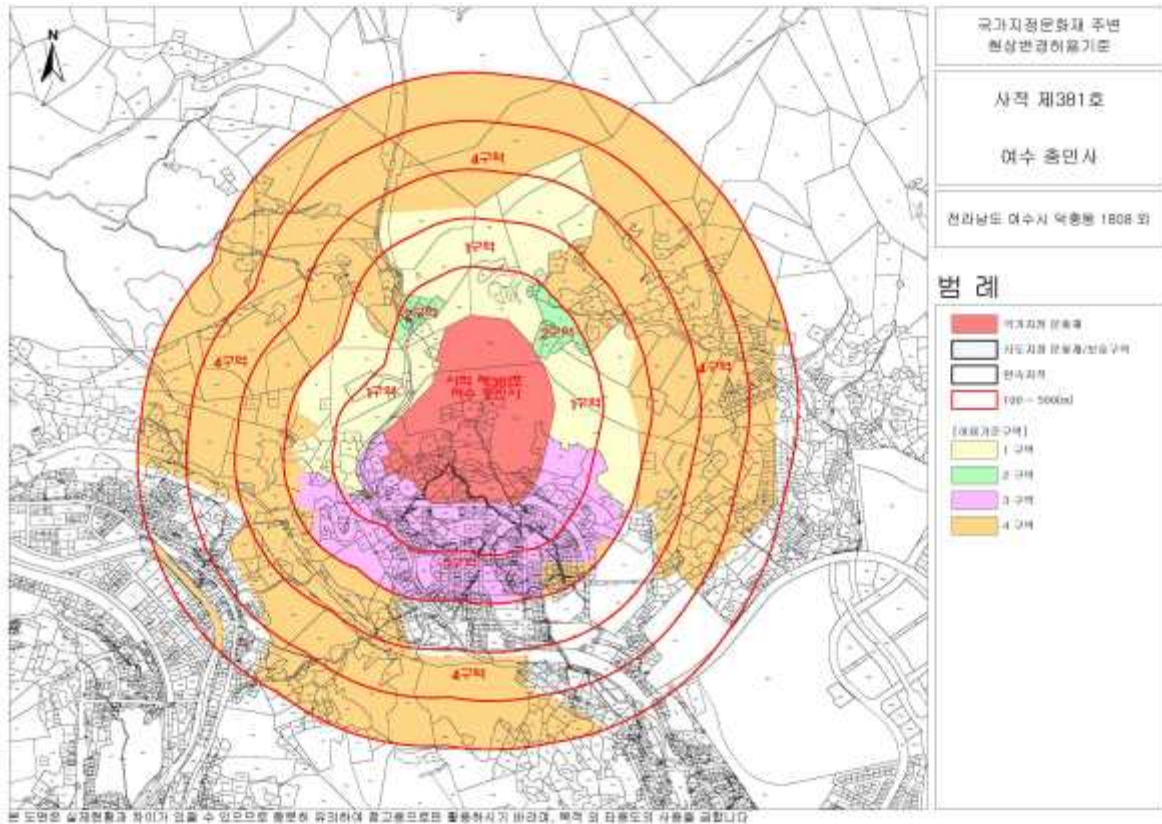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수 충민사(사적 제381호)
 -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덕충동 1808번지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보존구역		
제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4m(4층) 이하	□ 최고높이 17m(4층) 이하	
제4구역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신청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4m(4층) 이하	○ 최고높이 17m(4층) 이하	
4구역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한 번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시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 ○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하는 행위 시 개별 심의함.(절토 및 성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2.20/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여수 충민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수 충민사는 이순신 장군은 추모하는 사당임.
- 주변은 북·서·동측으로 산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측은 충민사보다 상당히 낮은 지형으로 주택지로 기 개발되어 있음.
- 현재 허용기준은 북·서·동측의 산지 능선 안쪽은 개별심의구역이며, 남측의 기 개발된 주택지는 4층 규모, 문화재 북측의 연접한 일부 2층 규모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으로 되어 있음.
- 이러한 현황과 여수 충민사의 경관 5대 지표(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일체성)를 종합하여 검토하면, 금회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협의에 따라 작성한 신청안과 같이, 남측의 일부 주·상·공업지역의 검토 범위는 200m 까지 하고, 남측 전면의 주택지는 4층 규모로 유지하되, 능선 너머와 전면의 먼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성절토에 대한 검토(공통사항에 포함되어

있음)가 된다면 도시계획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46. 여수 석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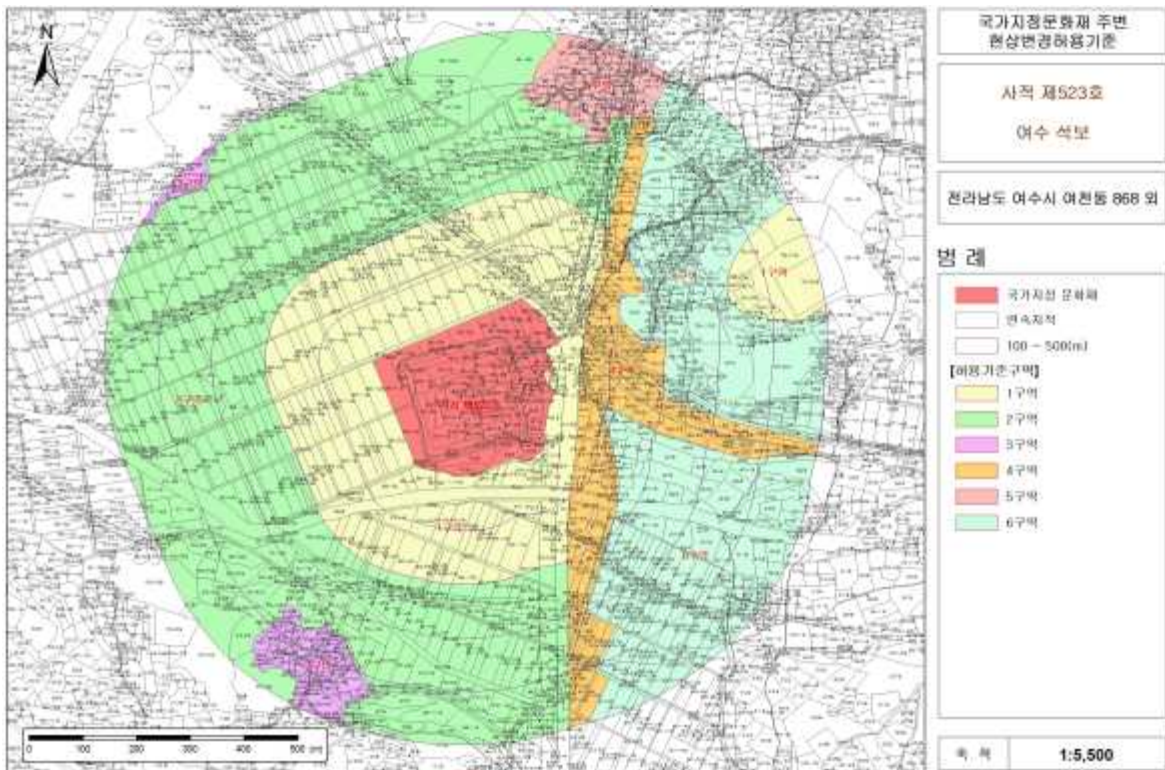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수 석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유형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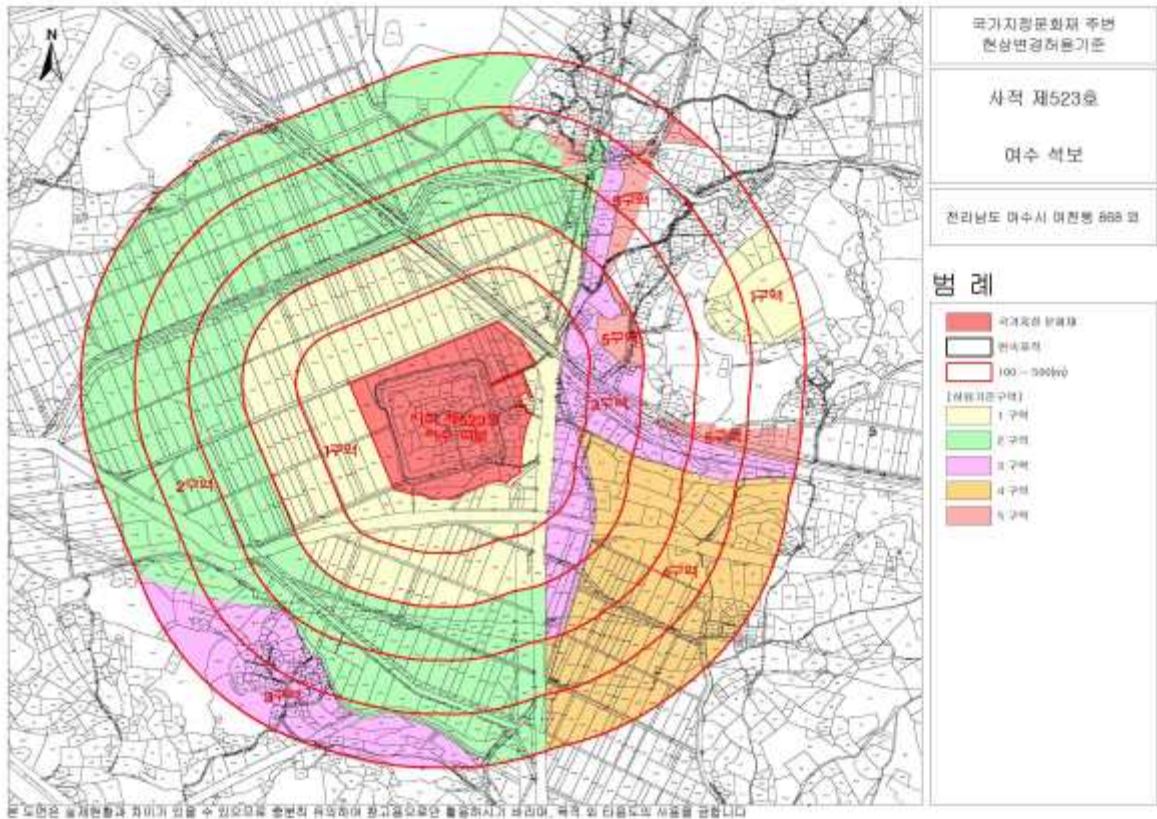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수 석보(사적 제523호)
 -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여천동 868번지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보존구역		
제2구역	-	□ 최고높이 11m 이하 (농가주택, 농가창고)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제4구역	-	□ 최고높이 14m 이하	
제5구역	-	□ 최고높이 20m 이하	
제6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공통사항	□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 농가시설은 농지법 규정에 따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신청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4m(3층)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7m(5층) 이하	○ 최고높이 20m(5층) 이하	
5구역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시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 ○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하는 행위 시 개별 심의함.(절토 및 성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2.20/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여수 석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군사적인 방어위주의 석보(石堡·돌로 쌓은 성)에서 출발하여 점차 관청용 물자비축의 창고와 장시 기능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유적임.
- 주변은 북·서·남측으로 경작지가 있으며, 동측은 연결한 도로를 경계로 근린생활시설과 주거 등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임.
- 기존 허용기준은 동측의 개발된 지역은 경사지붕 14m~20m까지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문화재와 연결한 북·서·남측은 문화재 주변 200m 까지 개별심의구역, 200m~500m 사이는 1층 규모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사이 사이 기 개발된 상황에 따라 2층 규모부터 5층 규모를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현황과 여수 석보의 경관 5대지표(장소성, 조망성, 일체성)를 종합하여 검토하면, 금회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협의에 따라 작성한 신청안과 같이, 동측은 주·상·공업지역의 검토 범위를 200m까지로 하고, 그 외 지역은 현황의 개발 정도를 고려하여 가로변은 3층 규모, 그 바깥은 5층 규모로 조망이 유지되어야 하며, 서측은 200m범위는 개별로 심의하고 그 바깥은 2층 규모, 남측의 철도선로에 의해 분절된 마을은 3층 규모로 한다면, 합리적인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단, 동측의 구릉은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며 여수 봉계동 토성이 잔존하는 곳으로서 유적을 확인하고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개별심의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신청안의 동측 1구역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7-06-047

1.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의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扶安 竹幕洞 祭祀遺蹟과 水聖堂)
 - * 수성당(水聖堂)(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8호, '74.9.27. 지정)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적벽강길 54 일원(격포리 산33-3번지 일원)
- (3) 지정신청 명칭 :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扶安 竹幕洞 祭祀遺蹟과 水聖堂)
- (4)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면적 : 문화재구역 16필지 21,284㎡
- (5) 관리단체(안) : 전라북도 부안군
- (6) 신청사유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굴조사된 해양제사유적으로 당시 사람들의 종교의식 규명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국제교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라.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7.04.18.(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扶安 竹幕洞 祭祀遺蹟과 水聖堂)을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扶安 竹幕洞 祭祀遺蹟과 水聖堂)”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67호)」에 따라 지역명+문화재명인 ‘부안 죽막동 유적’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유적은 약 22m 가량의 높은 해안 절벽 위 평탄지에 조성되어 있는데, 발굴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이후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제사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서해항로를 통한 동아시아의 국제 교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반도를 주축으로 중국과 일본으로 에워싸여 내해적 성격을 갖는 서해(황해)에는 필리핀 근처에서 중국 남해안을 거쳐 북상하는 쿠로시오(黑潮) 해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연안 지역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동질적이며 매우 유사한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내해적인 성격을 갖는 서해 및 남해 연안에는 해류·조류·바람 등 여러 자연조건을 공유한 동질적인 해양 연안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중·일을 잇는 해상 항로는 국제 간 상호 교류 촉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국제 해상 항로상의 대표적인 거점지로 부안 죽막동과 일본 오키노시마 제사유적이 해당된다.

이렇듯 해안 절벽 위에서 고대의 원시적인 제사 흔적이 그 문화경관과 함께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또한 시대 변천에 따라 제사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러한 신앙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예로서, 인류의 정신문화 발달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사유적과 관련된 수성당 건물을 제외하고 노천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과 정자 등이 조성되어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유적이 위치한 죽막동(대막골)은 반월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철마가 나왔으

므로 대마(大馬)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대막골 서남쪽 적벽강 해안에 있는 수성당(수성할미, 당집)은 신당으로 알려져 있다. 당집 밑에는 두 벼랑의 골은 바위가 둥근 통모양의 굴처럼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 물이 들 때에는 파도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한다. 대막골에 어느 눈먼 할머니가 두 아들을 두어, 큰아들은 고기잡이를 하고 작은 아들은 나무를 하여 살아가고 있었다. 하루는 고기잡이 나간 큰아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큰아들을 찾아 더듬더듬 이곳까지 나와 큰소리로 아들을 부르니 그 소리가 그 굴의 여울에 부딪혀 메아리치니 그 할머니는 아들이 대답하는 줄 알고 기뻐서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다가 그만 벼랑 밑으로 떨어져 죽었다. 몇 해가 지난 뒤 두 형제는 혼인하여 부인까지 얻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죽은 것을 알고 바닷가에 나와 며칠을 슬피 우니 갑자기 굴 위로 물이 차 오르면서 백발 노인이 나타나 금으로 된 부채를 주면서 ‘마을과 나라를 지키라’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형이 받은 부채를 부쳐보니 조용했던 바다가 갑자기 풍파가 일고 동생 것으로 부치니 그 풍파가 잔잔해지며, 그 굴속에서 조그마한 철마가 나와 형제가 타기만 하면 커져 비호같이 날았다고 한다. 그 뒤부터 이웃나라에서 침입하면 형이 철마를 타고 가서 부채를 부쳐서 적의 병선을 모조리 뒤집어 버렸다 하며, 또 동생은 고기잡이 나간 마을 사람들이 풍랑으로 위험할 때마다 부채질을 하여 많은 사람을 구했다 한다. 그 뒤 형제는 죽고 철마만이 그 굴 안에 남은 것을 어느 사람이 흠쳐와 자물쇠를 채워 감추어 두었다가 열어 보니 없어져 이상해서 그 굴로 와 보니 그곳에 있었다. 여러 차례 흠쳐갔으나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 와 있었다 하는데, 이제는 아주 없어졌다고 한다. 그 뒤 마을 사람들이 당집을 짓고 죽은 할머니와 아들 형제의 위패를 모시고 해마다 정월에 뱃길의 무사함과 풍어를 비는 제를 지낸다고 한다.

1) 개양할미 전설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수성당에 좌정해 있는 칠산바다의 여신. 칠산바다의 주요 해신(海神)은 개양할미와 그녀가 낳은 여덟 딸들이라 할 수 있다. 개양할미는 칠산바다의 여신을 총 지휘하는 으뜸 신격에 해당되며 어부들의 뱃길 안전과 풍어를 돕는 기능을 한다. 격포리의 적벽강 절벽에 있는 수성당은 개양할미와 그의 여덟 딸이 좌정해 있는 당집이다. 변산반도 일대에서는 개양할미에 관한 신화가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고 있다. 이 신화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주 먼 옛날 개양할미는 수성당 옆의 여울굴에서 나와 딸 여덟 명을 낳은 뒤 일곱 딸은 각 도나 섬에 한 명씩 시집보내고, 자신은 막내딸과 함께 수성당에서 살았다. 수성당은 아홉 여신이 좌정해 있다 하여 구낭사라고 하였다. 그 후 구낭사는 어민들이 개양할미를 바다의 성인 같은 존재로 받들어 모셨다 하여 수성당(水聖堂)이라 하고 개양할미를 수성할미라 부르기도 하였다. 개양할미는 키가 어찌나 큰지 굽나막신을 신고 서해바다를 걸어 다니면서 깊은 곳을 매우고 위험한 곳을 표시하여 어부들의 안전을 돌보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였다고 한다.

개양할미가 곰소 앞 바다의 ‘계란여’에 이르렀을 때 이곳이 어찌나 깊은지 개양할미의 치맛자락이 약간 물에 젖은 적이 있었다. 이에 화가 난 개양할미가 육지에서 흙과 돌을 치마에 담아 ‘계란여’를 메웠다고 한다. 이곳은 지금도 깊어서 이 지방의 속담에 깊은 곳을 비유하여 말할 때는 ‘곰소 둥병 속같이 깊다’라고 한다.”

- 이 신화에 따르면 개양할미는 선원들의 뱃길 안전과 고기잡이를 돕는 칠산바다의 해신임을 알 수 있다. 개양할미는 굽나막신을 신고 서해바다를 걸어 다니면서 위험한 곳을 표시하기도 하고, ‘계란여’와 같이 깊은 물을 흙과 돌로 메우면서 선원들의 안전을 보살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신화의 내용처럼 개양할미가 낳은 딸들이 전국 각 도에 배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개양할미의 딸들이 칠산어장의 해안·도서 지역으로 시집보내진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죽막동 마을을 비롯한 변산반도 주민들은 개양할미의 딸들이 위도의 당집, 모항(띠목) 당집, 곰소 당집, 고창군 동호리 영신당, 계화도 당집, 돈지 당집, 조포(새포) 당집에 좌정해 있다고 한다. 이들 여신은 칠산바다를 총괄하는 개양할미의 지시를 받는다고 한다.

2) 부안 수성당과 당신제1)

- 개양할미 신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죽막동 마을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수성당에서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날에 개양할미와 딸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 오고 있다. 수성당은 건축면적 13.44㎡ 단칸 기와집으로 되어 있으며, 1974년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8호’로 지정되었다. 이 당집은 1804년(순조 4)에 처음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개축되어 정확한 건립 시기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수성당 상량문에 “도광 삼십년 경술 사월이십팔일 오시 이차상량(道光 三拾年 庚戌 四月二十八日 午時 二次上樑)”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수성당은 확실히 1850년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건물은 1996년에 증·개축한 것이다. 수성당 근처인 죽막동 제사 유적에서는 백제시대 이후부터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해양제사 관련 유물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개양할미에 대한 제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승된 것으로 짐작된다.

1950년 전까지만 해도 수성당제는 많은 선주의 시주로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날에 성대하게 모셔졌다. 수성당제는 1960년대 중반에 중단되었다가 2004년에 마을 주민들에 의해 복원되었다. 최근에 복원된 당제는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날에 모셔지며, 제사는 유교식 방식과 무속식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마을 대표자로 선정된 제관들이 당집 안에서 축문과 함께 유교식으로 제사를 올리고 나면 외지에서 초빙된 강신무와 민속예술연구원 소속 예술단이 당집 바깥 공터에서 바다를 마주보며 용왕굿을 연행한다.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적벽강 절벽 위에 있는 수성당은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의 당젯봉 꼭대기에 있는 원당과 일직선으로 마주보고 있다. 과거에는 이들 지역에서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날에 풍어와 안전을 비는 당제가 많은 선주의 참여 속에 단골의 주관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한다. 이처럼 당제가 활발하게 연행된 것은 위도와 변산반도 사이의 해역이 조기잡이 어업의 중심 해역이기 때문이었다. 부안군 줄포만 일대와 위도면은 일제강점기 때 조기 파시가 설 정도로 대단한 조기 산지(產地)였다.

특히 위도는 그물코마다 조기가 가득 잡힌다는 황금어장으로 유명하였다. 이런 까닭에 전국 각지의 어선들이 앞을 다투어 위도 지역으로 몰려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위도와 격포항 사이에 있는 임수도는 조류가 심하고 물의 흐름이 매우 복잡하여 해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 지역이었다. 격포항은 조선시대 때부터 격포와 위도 사이로 배가 항해하는 중요한 관문이었으며, 고기잡이 어선은 반드시 이 해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칠산어장 어민들은 수성당의 개양할미에게 절대적으로 의탁하여 풍어와 배길 안전을 기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업이 성한 당시에는 외지의 어선들조차도 격포 수성당에 이르면 선원들이 바닷물에 목욕을 하고 수성당을 향해 고사를 올렸다고 한다.

격포 수성당과 마주보고 있는 위도면 대리마을의 원당도 개양할미와 그녀의 딸이 좌정해 있는 당집으로 추정된다. 당집 내부 정면 벽에는 원당(元堂) 마누라, 본당(本堂) 마누라, 옥저부인, 애기씨 등의 당화가 걸려 있다, 이 가운데 원당 마누라는 개양할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당 마누라는 개양할미가 시집보낸 딸이고, 옥저부인과 애기씨는 개양할미 딸의 후손인 것으로 추정된다.

개양할미가 여덟 딸들과 함께 수성당에 좌정하였듯이 위도면 대리마을의 원당에서도 개양할미의 딸들이 다시 가족을 이루어 해신으로 좌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도면 대리는 정통 세습무의 주관으로 당제가 전승되고 있는 칠산어장의 유일한 마을에 해당된다. 당집은 마을 뒷산인 당젯봉에 위치하며, 대상 신격은 대부분 여신이다. 198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82-3호’로 지정된 이 마을의 당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날에 모셔진다. 당곳과 용왕곳은 이 마을 단골인 조금례가 주도해 왔으나 현재는 신안군 비금도 단골인 유점자가 초빙되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격포 수성당은 칠산어장에서 가장 많은 여신을 모신 당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수성당 내부 벽면에는 용왕, 개양할미와 여덟 딸들, 산신, 여덟 아가씨들, 장군신 등 5점의 당화(堂畫)가 걸려 있다. 이러한 당화는 김동식에 의해 2004년에 복원된 것이라고 한다. 수성당이 구낭사(九娘祠)라 불린 점으로 보아 과거에는 개양할미와 여덟 딸만을 그린 당화가 전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대에 전승되는 과정에서 많은 신격이 첨삭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개양할미와 딸들을 그린 당화는 개양할미가 막내딸을 안은 채 중앙에 앉아 있고,

그 앞과 양옆으로 일곱 딸들이 앉아 있는 형태이다. 마치 가족사진을 찍어 벽에 걸어 놓은 것처럼 개양할미와 여덟 딸들을 그린 당화가 수성당 내부 정면에 붙어 있는 것이다. 현재 주민들은 수성당(水聖堂)을 구낭사라 부르고 있고, 또 실제 당화에는 아홉 여신이 그려져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성당에 좌정해 있는 해신은 아홉 여신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화에는 개양할미와 막내딸의 모습이 유달리 도드라져 보인다. 덩치 큰 거구의 개양할미가 그림 중앙에 앉아 있고 그 품속에 막내딸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신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양할미와 막내딸이 수성당에 거주하는 주요 신격임을 시사한다.

수성당은 칠산어장의 당집에 좌정한 여신들의 본가(本家)이자 원당이라 할 수 있다. 수성당의 주요 신격이 개양할미와 막내딸임에도 불구하고, 수성당에 개양할미 가족을 모두 좌정시킨 것은 수성당이 시집간 딸들의 본가이자 원당임을 암시해 준다. 개양할미가 딸네 집을 왕래하고 딸들이 개양할미의 지시를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개양할미는 시집간 딸들을 총 관리하는 으뜸 신격이고, 개양할미가 거주하는 수성당은 칠산어장 당집의 총 본부라 할 수 있다.

- 부안 수성당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1992년)에서 고대 백제, 가야, 중국, 일본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유물의 대부분은 기원후 3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제사행위가 이루어졌음과 또한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제의에 참여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일부 유물은 그 이후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제장이 운영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주목되는 특징으로는 발굴조사 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고려~조선시대 기와들과 수성당 개양할미 당신제와 당집 건립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고대 노천(露天) 제사에서 사당(祠堂)제사로의 변화과정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변산반도의 관음신앙의 형성과 전승의 중심에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이 위치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조사·연구성과>

국립전주박물관, 1994,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
 국립전주박물관, 1995, 『특별전 바다와 제사-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
 국립전주박물관, 1998,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연구』 .
 국립전주박물관, 1999, 『부안 해안일대 유적지표조사 보고』 .
 국립전주박물관, 2001, 『전북의 역사문화유산Ⅲ 부안』 .
 국립전주박물관, 2008, 『부안 죽막동유적 주변지역 지표조사보고서』 .
 부안군, 2004, 『부안문화유산자료집』 .
 부안군·원광대박물관,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부안군-』 .
 부안군·전주대산학협력단, 2010,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세미나-동아시아 해양실�크로드와 부안』 .
 부안군·전주대산학협력단, 2014,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부안 해양』 .

문화의 세계유산 가치』.

송화섭, 2008, 「부안 죽막동 수성당의 개양할미 고찰」, 『민속학연구』 제22호. 등

<수성당 보수정비이력>

건립 및 보수 연도	내 용
1804년	최초 건립 추정(상량문 내용)
1850년	2차 개축(상량문 내용)
1940년	3차 개축(상량문 내용)
1973년	4차 개축(상량문 내용)
1996년	전면 증·개축
2004년	수성당 주변정비사업(목책 및 정자 설치 등)
2010년	수성당 소화전 설치
2012년	수성당 주변정비사업(화장실 설치 등)
2013년	수성당 주변 전기공사
2015년	지붕 전면 해체보수 공사
2017년	수성당 주변 지하물리탐사 조사 실시

○ 특징

죽막동 제사유적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적벽강길 54(격포리 죽막동 252-18외)에 분포한다. 해당시대는 원삼국~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조선시대이다. 문화재로 미지정된 상태이다.

죽막동 제사유적은 서해안에 돌출된 해안절벽에 형성된 해식동굴 옆에 형성된 유적으로 백제시대 이후부터 통일신라시대, 고려~조선시대까지 바다 제사가 이어진 유적이다. 1992년 수성당 주변 해안초소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이 후 국립전주박물관이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백제, 가야, 중국, 일본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수성당 바로 뒤편의 평탄면에 약 30cm의 두께로 퇴적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삼국시대인 3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대체로 3세기 후반부터 변산반도 일대 토착 세력들이 제사를 지냈으며 5~6세기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도 제의에 참가했음과 제사가 끝나면 제기를 포함한 각종 물품을 신에게 바치는 의미로 깨서 버리는 파쇄행위가 이루어지고 흙으로 만든 말, 실제 크기보다 작게 만들어진 석제품, 말갯춤 등이 제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사행위는 시대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주는데, 삼국시대에는 전 기간에 걸쳐 4단계로 제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I 단계(3세기 후반)는 마한 제사로 볼 수 있다. 제사에는 둥근 바닥 짧은 목 항아리만 사용하였다. II 단계(4세기)는 마한·백제의 제사로 볼 수 있다. 제사에는 역시 항

아리 중심의 토기만 사용하였다. 그러나 토기의 기종과 수량이 증가해 제사의 규모가 I 단계보다는 확대되었다.

Ⅲ단계(5세기 전반~6세기 전반)는 백제와 가야, 왜(倭)의 제사로 부안 죽막동 유적에서 중심을 이루는 시기이다. 먼저 백제의 제사에는 항아리·독·파배·뚜껑접시·병 등의 각종 토기와 토제모조품, 중국 청자를 사용했으며, 제사에 국가가 관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야의 제사에는 쇠창·쇠도끼·말안장·동경 등의 금속유물을 독에 넣어 공헌(供獻)하였다. 역시 국가나 최고지배층이 제사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의 제사에는 석제모조품이 사용되었으며, 일본에서 행해진 해신제사의 양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Ⅳ단계(6세기 중·후반~7세기 전반)는 백제의 제사로 I·Ⅱ단계처럼 제사에는 항아리, 통형기대, 곧은 입항아리, 병 등의 토기만 사용하였다. 각 단계별로 진행된 제사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제사에의 관여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단계의 백제와 가야의 제사는 해상교섭의 필요성이 증대하던 시점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신에게 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해상교류의 길목이나 중요한 기점에서 원거리 항해의 안전이나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해 제사에는 토기뿐만 아니라 금속유물, 토제모조품, 중국 청자와 같은 특수 공헌물품을 다량으로 사용하였다. 그 외의 제사는 재지세력이 연안을 통한 이동이나 어로활동과 관련해 별도의 공헌물 없이 소량의 토기만을 사용해 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제사는 삼국시대의 Ⅳ단계처럼 소량의 토기나 청자, 백자 등을 제기(祭器)로 사용해 해상이동의 안전이나 풍어를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제사양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서해안 일대에 남아 있는 해양신앙과도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와가 출토되고, 19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수성당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부터는 노천제사(露天祭祀)를 벗어나 실내에서 제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굴조사된 해양제사유적으로 당시 사람들의 종교의식 규명과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국제교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지금까지 국내 유일의 유적에 해당한다.
- 고대사회의 제사흔적이 문화경관과 함께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대변천에 따라 제사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러한 신앙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예로서 인류의 정신문화 발달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 바다와 관련된 제사유적의 경우 고고자료와 민속자료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
-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은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 문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사유적으로 이와 유사한 일본의 무나카타(宗像)·오키노시마(沖ノ島) 관련

유산군이 세계문화유산에 잠정등록된 점도 고려된다.

- 특히, 출토된 유물 중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고대 제사유적으로 세계유산에 잠정등록된 일본 오키노시마(沖ノ島) 제사유적과의 유사성을 상정할 수 있는 유물도 다수 확인되어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리고 백제, 가야, 중국, 일본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다수 포함되어 우리나라 고대 제사의 시기적인 변천을 잘 반영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은 규모나 출토품의 다양성 면에서 동아시아 최대 해양 제사유적이자 고대 백제시대 이래 바다 항해의 안전을 기원한 우리 민족 해양 제사유적의 원형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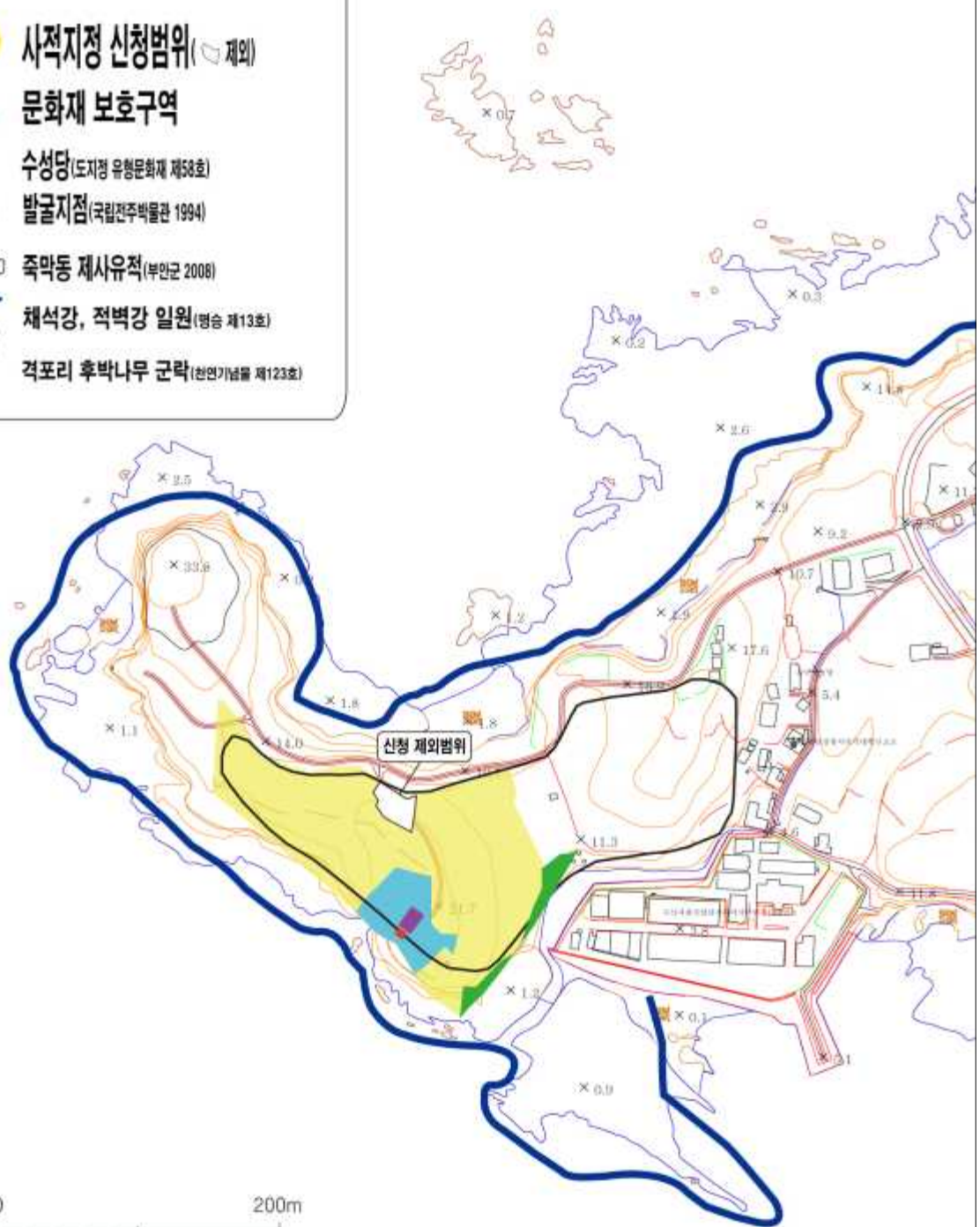
- 신청면적 : 총 16필지 21,284㎡

- 검토의견 : 지정구역 신청에서 수성당은 고대의 제사유적과 연관성이 적으므로 제외하고, 신청된 구역 중에 현 발굴된 폐기장은 사적의 지정구역으로 하고 제사유적과 관련하여 유적의 분포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주변과 군부대를 포함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범례

-  사적지정 신청범위(제외)
-  문화재 보호구역
-  수성당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58호)
-  발굴지점 (국립전주박물관 1994)
-  죽막동 제사유적 (부안군 2008)
-  채석강, 적벽강 일원 (명승 제13호)
-  격포리 후박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제123호)









유적원경(남→북)



유적원경(북→남)



발굴조사 전경



발굴조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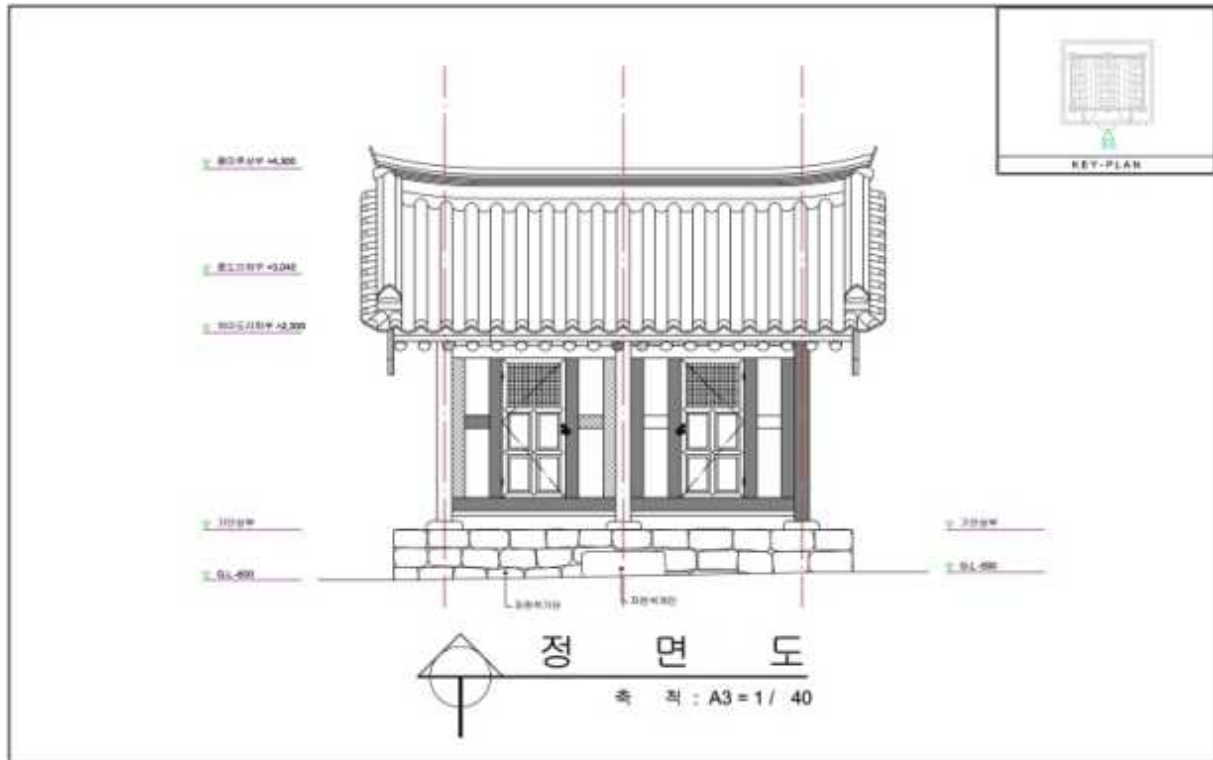
유물출토 전경



복원된 출토 유물



수성당 근경(1980년경)



발굴 출토유물(1992년)



기원후 4세기대(上), 5~7세기대(下) 토기류



토기류 - 기대(器臺)



석기류 - 석제모조품(石製模造品)



청동기류 - 마구(馬具)



청동기류 - 방제경(倣製鏡)



철기류 - 무기(武具)



철기류 - 마구(馬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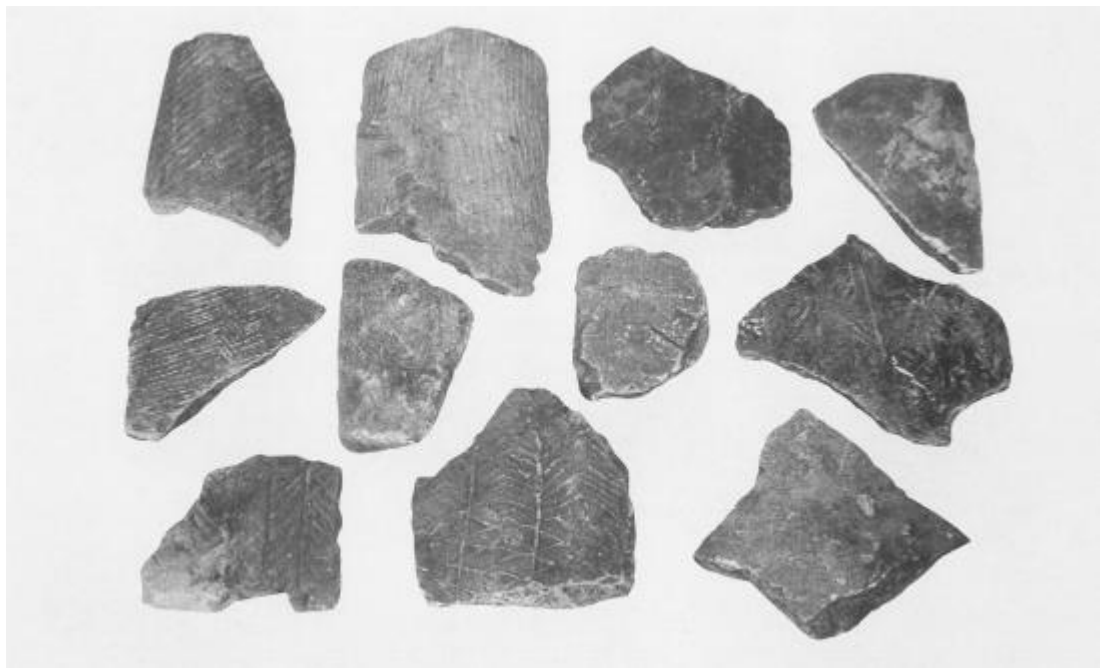
중국도자 - 청자호(靑磁壺)



사람모양 토제품(左), 말모양 토제품(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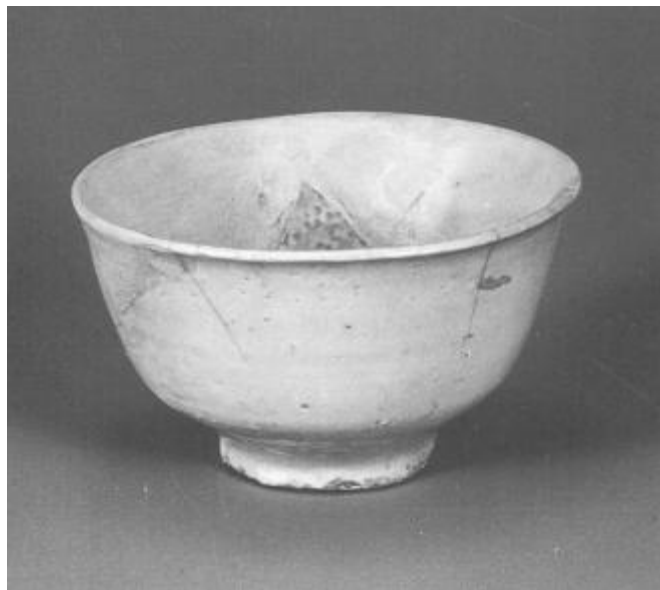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 기와류



고려시대 기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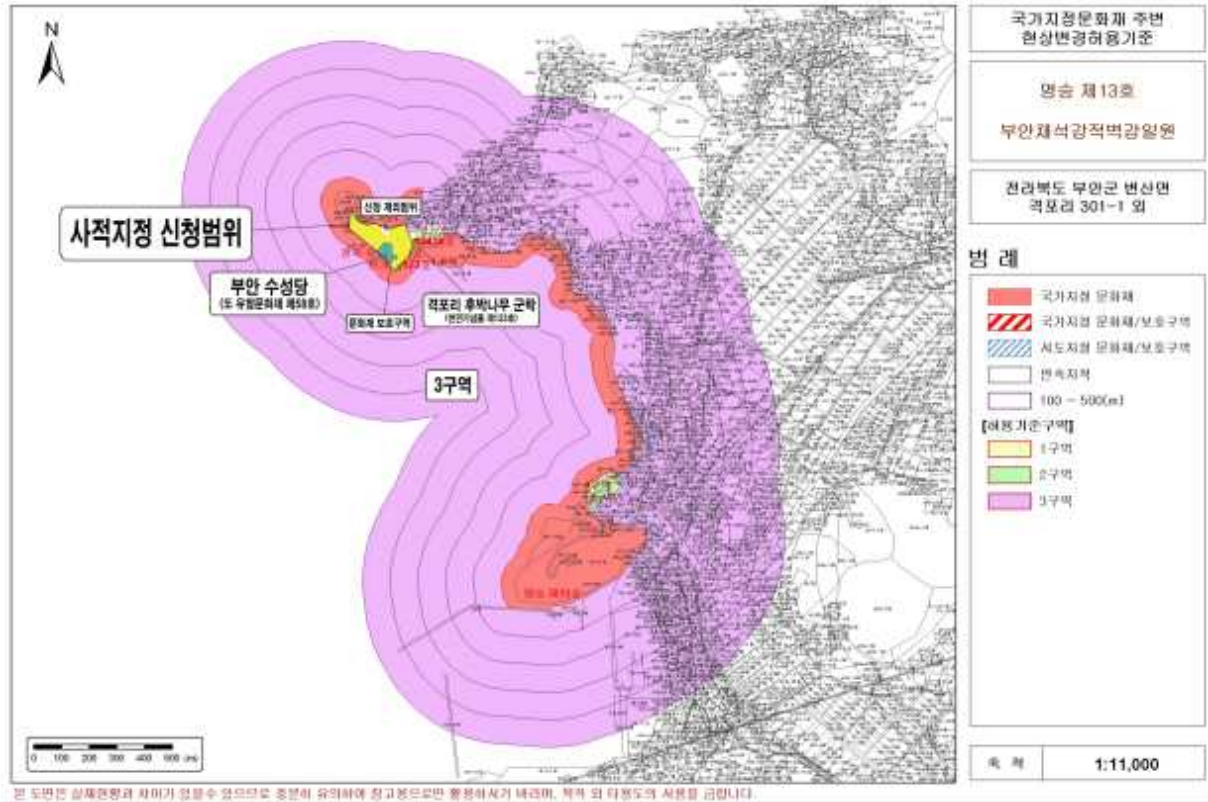
고려시대 청자대접(左), 청자말(右)



조선시대 백자대접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명승구역에 바다를 3구역으로 하였으나, 사적에서는 문화재의 일체성에서 개별심의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이번 사적지정 신청범위는 기존의 명승,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기준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 해당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함을 밝힌다.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된 도면도의 설명을 금합니다.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2구역	○ 부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다만, 지하 터파기는 최고 5m 까지 허용하며,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실시		
3구역	○ 부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종합정비 계획 수립

-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이 위치한 지역은 천연기념물 제123호 후박나무 군락,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이 위치한 문화재 밀집지역.
- 종합정비계획이 미수립된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하여, 성격이 다른 세 개의 문화재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발굴조사 계획

- 조사대상
 -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 일대 발굴조사
 - 부안 수성당 해식동굴 북쪽부 평탄부
(군유지, 산33-3임, 산33-8임, 252-23전, 252-37전, 252-38전)
 - 부안 수성당 입구변 동쪽 구릉사면부
(군유지, 252-36전, 252-17전, 252-18전)

○ 조사내용

- 1992년 죽막동 제사유적의 중심부로 파악된 수성당 입구변의 북쪽부(해식동굴 건너편) 평탄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한 후, 정밀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 수성당 입구변 동쪽 구릉사면부의 균유지를 대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전반적인 범위를 파악한다.
-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이 자리한 변산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한다. 2008년 국립전주박물관이 실시한 지표조사보고를 토대로 당시 조사된 유적의 현황파악과 새로운 유적의 확인, 동일 성격의 유적에 대한 조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 소요예산 : 500,000,000원

○ 조사기간 : 2017년~22년(5년간)

□ 토지매입 계획

○ 매입대상

-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은 필지 전체를 매입할 계획
-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 범위에 해당하며 이번 사적 지정 신청범위에 포함되는 토지 17필지 중 개인소유지인 7,812㎡

○ 소요예산 : 1,000,000,000원

○ 매입기간 : 2017년~22년(5년간)

○ 매입토지 활용방안

- 추가 시굴조사 및 관련 학술조사 실시
- 민속 의례장소 등 다양한 활용 방안 강구 예정

□ 정비계획

○ 정비대상

-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의 범위에 포함된 지번
- 수성당 해식동굴 북쪽 평탄지 일대(향후 표본조사 대상지)
- 부안 위도지역 당숲·당집을 포함하는 부안 변산면 일대 해양문화 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

○ 정비형태 : 잡풀 제거, 시야 확보, 종합정비계획안 마련

○ 소요예산 : 1,000,000,000원

○ 사업기간 : 2017년~22년(5년간)

□ 탐방로 정비 및 추가 개설

○ (現)개설구간 : 해안누리길 변산마실길 1코스, 3코스(수성당)

○ 추가구간 : 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수성당 해식동굴 북쪽 평탄부의 시굴결과에 따라 이 일대를 정리하고 수성당과 해식동굴, 사자봉 정상부를 이어주는 탐방로 개설과 주변이 한 눈에 조망될 수 있는 전망대 설치 요망

- 문제점 : 현재 추가 시굴구간으로 제안한 사자봉 지역은 군사작전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사 전 사전협의를 필요
- 길이 및 형태 : 약 500m, 너비 2m, 탐방로 황토포장
- 소요예산 : 500,000,000원
- 사업기간 : 2017년 ~ 22년(5년간)

9. 종합 의견

-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굴조사된 해양제사유적으로써 당시 사람들의 종교의식 규명과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국제교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지금까지 국내 유일의 유적에 해당한다.
- 고대사회의 제사흔적이 문화경관과 함께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대변천에 따라 제사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러한 신앙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예로서 인류의 정신문화 발달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 바다와 관련된 제사유적의 경우 고고자료와 민속자료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
-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은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 문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사유적으로 이와 유사한 일본의 무나카타(宗像)·오키노시마(沖ノ島) 관련 유산군이 세계문화유산에 잠정등록된 점도 고려된다.
- 특히, 출토된 유물 중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고대 제사유적으로 세계유산에 잠정등록된 일본 오키노시마(沖ノ島) 제사유적과의 유사성을 상정할 수 있는 유물도 다수 확인되어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백제, 가야, 중국, 일본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다수 포함되어 우리나라 고대 제사의 시기적인 변천을 잘 반영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수성당”은 규모나 출토품의 다양성 면에서 동아시아 최대 해양 제사유적이자 고대 백제시대 이래 바다 항해의 안전을 기원한 우리 민족 해양 제사유적의 원형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은 제사유적의 폐기장임이 확실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수성당은 시대와 성격이 다르므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따라서 지정 명칭 또한 “부안 죽막동 유적”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지정구역 설정에 있어서 제사유적의 특성 상 바닷가의 가장 돌출된 부분인 현 군부대가 입지한 곳이 가장 중요한 곳으로 판단되어 지정구역을 군부대까지 확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현 사적 지정 요청구역은 제사유적의 핵심구역이라기 보다 폐기장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조사에 의해 제사유적의 실체를 밝히고 지정할 필요가 있어, 신청된 구역 중에 현 발굴된 폐기장은 사적의 지정구역으로 하고 그 주변과 군부대를 포함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 참고사항

(1) 사적(신청지) 지정 면적 조서

문화재가 건축물·구조물 등인 경우

(면적: m²)

연번	명칭	시대/ 연대	구조/형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수성당			조선/ 1800년대	민도리,삼량가/ 정면 2칸, 측면1칸, 단층/맞배지붕	5,435m ² (보호2,538.8m ²)	13.44m ²	당집	격포리/ 산33-3임, 산35-17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52-15 (적벽강길 54)	대	162	162						
2	격포리	252-17	전	860	860						
3	격포리	252-18	전	912	912						
4	격포리	252-19	전	2,383	2,383						
5	격포리	252-20	전	1,987	1,987						
6	격포리	252-23	전	1,306	1,306						
7	격포리	252-36	전	1,974	1,974						
8	격포리	252-37	전	716	716						
9	격포리	252-38	전	3,769	3,769						
10	격포리	252-39	전	34	34						
11	격포리	산33-3	임	2,856	2,856						
12	격포리	산33-4	임	198	198						
13	격포리	산33-7	임	822	822						
14	격포리	산33-8	임	672	672						
15	격포리	산33-9	임	54	54						
16	격포리	산35-17	임	2,579	2,579						
계				21,284	21,284	16필지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사적	<p>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p> <p>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p> <p>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p> <p>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p> <p>라.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p> <p>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p> <p>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p> <p>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p> <p>다. 역사(驛舍)·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p> <p>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p> <p>마. 제단, 지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p> <p>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p>

바.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2.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II권역에 속하는 1필지 281㎡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추가지정면적 : 1필지 281㎡
- (4) 지정 사유
 - (지정)풍납토성 내 II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7.05.17)
 - II권역은 풍납토성의 핵심권역(사적지정·매입예정지에 해당)으로 해당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2-109	대	281	281		
합계		1필지		281	281		

3. 김해 봉황동 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는 김해 봉황동 유적의 연접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봉황동 253
- (3)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면적 : 문화재 보호구역 21필지 3,523㎡
- (4) 관리단체(안) : 경상남도
- (5) 신청사유
 - 최근 발굴조사 결과로 봉황동유적과 동일한 유적으로 확인되어 문화재청에서 보존조치 통보한바 있어 그 주변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확대지정 관리하기 위함

라. 지정조사보고서

현지조사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7.4.14
- 조사자: 문화재위원 ○○○,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김해 봉황동 유적(金海 鳳凰洞 遺蹟)의 연접구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김해 봉황동 유적(金海 鳳凰洞 遺蹟)”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지역명+문화재명인“김해 봉황동 유적(金海 鳳凰洞 遺蹟)”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김해 봉황동 유적은 김해의 중심을 흐르는 해반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지봉·수로왕릉·수로왕비릉 등과 인접하고 있다. 또한 김해 금관가야의 유적지로 둘러 쌓여 있다. 참고로 봉황동 유적은 1-4세기 우리나라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생활유적이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김해 봉황동 유적은 가야시대의 대표적인 조개무지로 1920년 우리나라 고고학상 최초로 발굴 조사된 회현리 패총과 금관가야 최대의 생활 유적지인 봉황대(그 문화재 자료 제87호)가 합쳐져 2001년 사적으로 확대 지정된 유적이다. 패총에서는 소위 김해시 토기와 각종 철기, 골각기 등과 함께 중국 왕망시대(AD9-22)의 화천이라는 동전이 출토되어 당시의 교역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불에 탄 쌀이 출토되어 쌀농사의 기원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었다. 또한 구릉 위에는 황세장군과 여의낭자 전설에 관련된 여의각, 황세바위 등이 남아 있으며 가야시대 고상가옥, 주거지 등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김해시장)

- 김해 봉황동유적(사적 제2호)은 가야시대의 대표적인 조개무지인 회현리 패총과 봉황대 및 가야시대 해상포구 등이 발굴된 유적 등이 합쳐져 확대·지정된 유적이거나 실제로 유적의 분포범위는 전 궁허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구릉의 동편과 패총 남쪽 주거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유적이다.
- 이곳 봉황동유적은 패총, 주거지, 고상가옥, 공방지 뿐만 아니라 취락의 방어시설 등에서 실제 생활에 사용했던 토기, 골각기, 철기 등의 생활 유물들이 다양하게 출토되는 금관가야 지역 최대의 종합 생활유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면적은 전체유적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 따라서 봉황동유적은 기 지정된 봉황동유적(68필지 99,301m²-지정구역, 73필지 11,025m²-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주위의 구릉 하단부에 위치한 본 유적을 포함한 곳이므로 문화재 지정 범위를 실제 유적이 분포하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체를 하나의 유적으로 통합하여 보호,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또한 최근 발굴조사 결과로 유적이 확인되어 문화재청에서 보존조치 통보한바 있어 그 주변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확대지정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신청면적 : 21필지, 3,523㎡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김해시 봉황동	161-1	전	105	105		
2		161-2	도	8	8		
3		161-5	전	653	653		
4		161-6	전	6	6		
5		162-1	대	1007	1007		
6		162-2	전	183	183		
7		162-3	도	43	43		
8		162-4	대	74	74		
9		162-5	전	128	128		
10		162-6	전	23	23		
11		162-7	도	495	495		
12		162-8	전	179	179		
13		162-9	대	9	9		
14		162-10	대	5	5		
15		162-11	전	1	1		
16		163-7	전	22	22		
17		166-1	도	60	60		
18		165-16	도	6	6		
19		304-1	대	200	200		
20		304-6	대	170	170		
21		305-4	대	146	146		
계				3,523	3,523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金海 鳳凰洞 遺蹟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53

별 레

- 문화사
- 보존구역
- 연속지적
- 추가 보호구역 지정



축 척 1:2,000

본 도면은 실측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한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사용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봉황동 유적
(사적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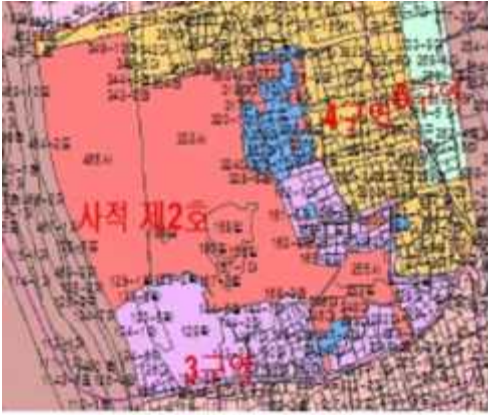

봉황동유적 확대정비사업 계획구간
(※장기계획으로 변동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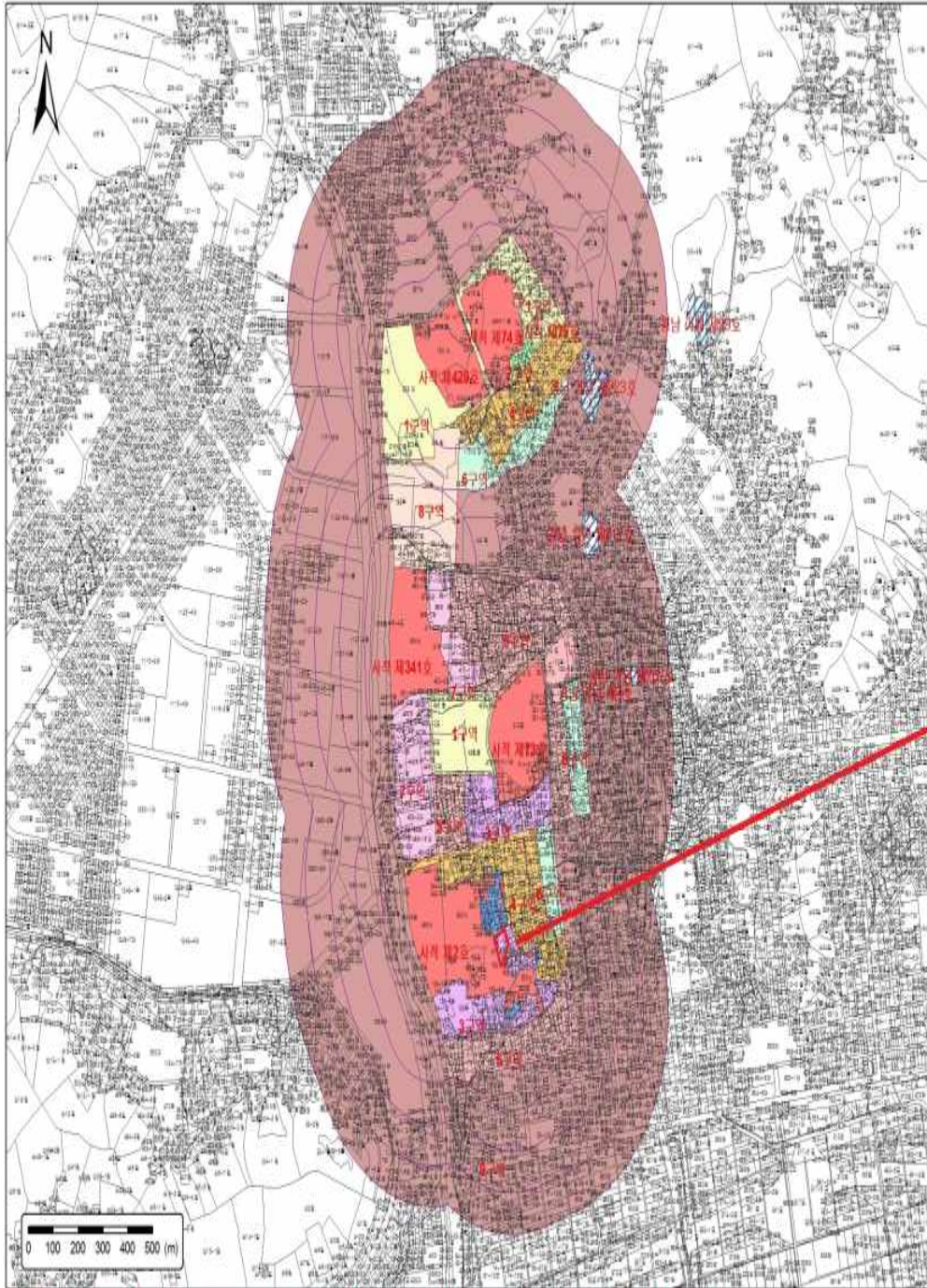
가야왕궁터 특원
대상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지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500m 범위는 확대하되, 현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문화재주변 행위기준 설정사유 (구역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측은 가야의 거리와 해반천(9구역)이 위치하고 있고 북측은 김해도서관(7구역) 및 기존 건물(4,5구역)이 있으며 동측은 기존 건물(4,6구역)들이 있고 남측은 기존 건물(3구역)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추가로 보후구역이 지정되면 주변지역은 기존 행위기준안과 같이 그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행위기준 기준(안) (문화재청의 유사문화재 고시사항 참고)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문화재 보호구역			
평지붕과 경사지붕의 최고높이 기준이 다름								
행위기준 도면(안) (별첨가능) * 주변 문화재 포함시 표기					[보존지역][별첨]			
	[기존]		[변경 안]					
민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문화재지정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는 2013년 문화재 보존 처리되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봉황동 163-2 번지 근접 필지들로서 유사한 유적이 출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문화재보존을 위해 사실상 모든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실정 							
최근 3년간 현상변경 허가사항 (해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변경허가사항 없음 							
참고사항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외 5건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53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구역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 6구역
 - 7구역
 - 8구역
 - 9구역

축척 1:12,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재 보존·정비·활용 계획(안)											
사업개요 (총괄)	현 봉황동 유적					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 봉황동유적확대정비사업 ○ 위치 : 김해시 봉황동 316번지 일원 ○ 면적 : 16,324㎡(국·공유지 3,008㎡, 사유지 13,316㎡) ○ 사업기간 : 2007년 ~ 2020년 ○ 사업내용 : 부지매입, 발굴조사, 왕궁복원 ○ 사업비 : 19,600백만원(국비 13,720, 도비 2,058, 시비3,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및 지장물 매입(주변정비) ○ 위치 : 김해시 봉황동 162-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량 : 부지매입 3,523㎡, 주변정비 ○ 사업비 : 3,845백만원(국비 2,692, 도비 403, 시비 750) 					
그간 보존·정비 실적	현 봉황동 유적					보호구역					
	관리상황 참조					-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 봉황동 유적					보호구역					
	현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1. 사업대상지의 현재 용도지역을 1종주거 지역 및 도시지역으로서 토지이용이 되고 있으나, 2. 사적지 범위를 확정하여 대성동고분과 연계 가야문화의 벨트로 조성하여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완료후 대상지 전체를 자연녹지지역, 보호구역으로 관리계획					
종합정비 계획안에 다른 문화재 학술조사, 정비계획	현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토지매입 완료 후 문화재 발굴조사 및 학술조사 계획					
문화재 활용 및 홍보방안	1. 문화재 활용방안(내부) - 가야역사문화시설인 가야문화관, 가야체험관, 스토리체험관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가야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함. 2. 주변 자원과 연계방안 - 국립 김해박물관, 대성동 고분박물관, 문화의 전당, 연지공원,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구지봉, 봉황동유적 가야의 거리등과 연계하여 가야역사문화 벨트화 3. 시민단체 등 연계 활용방안 - 초·중·고 시민단체 등의 가야역사문화 탐방 시책의 활성화 - 관광코스와 연계한 본 지역의 활용도 제고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단기,장기)	구분	합 계		2017 계획		2018 시행		2019 시행		2020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부지매입	3,845	부지매입	1,000	부지매입	1,000	부지매입	1,000	부지매입	845
	국비	(3,973㎡)	2,692	(1,007㎡)	700	(988㎡)	700	(988㎡)	700	(990㎡)	592
	도비	및	403	및	105	및	105	및	105	및	88
시비	주변정비	750	주변정비	195	주변정비	195	주변정비	195	주변정비	165	
기타 참고사항	1. 관련 민원(해당사항 없음)										

9. 종합 의견

- 김해 봉황동유적(사적 제2호)은 가야시대의 대표적인 조개무지인 회현리 패총과 봉황대 및 가야시대 해상포구 등이 발굴된 유적 등이 합쳐져 확대·지정된 유적이다.
- 이곳 봉황동유적은 패총, 주거지, 고상가옥, 공방지 뿐만 아니라 취락의 방어시설 등에서 실제 생활에 사용했던 토기, 골각기, 철기 등의 생활 유물들이 다양하게 출토되는 금관가야 지역 최대의 종합 생활유적이라 할 수 있다.
- 현 추가지정 요청 구역은 추정 가야왕궁지의 연접 하부로서 2012년 발굴에서 수혈·주혈 등 삼국시대 유구가 발굴되어 보존조치 된 바 있으며, 봉황동 유적과 연계된 유적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완충구역 개념으로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발굴에 따라 지정구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4. 김해 양동리 고분군 보호구역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제454호 「김해 양동리 고분군」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남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는 김해 양동리 고분군의 연접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해 양동리 고분군(사적 제454호 / 2004.7.24. 지정)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3번지 일원
- (3)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면적 : 문화재 보호구역 21필지 5,372㎡
- (4) 관리단체(안) : 경상남도
- (5) 신청사유
 - 김해 양동리 고분군은 발굴조사 결과 다양한 묘제와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일찍부터 김해지역 중심고분유적의 하나로 주목받은 곳으로서 고분군 및 고분군 관련 유적이 실제로 더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는 주변 지역에 대해 문화재 지정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으며, 현재 양동리 고분군 주변 양동리 마을은 김해 시가지와 고속도로가 가까워서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 계속 들어설 예정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유적의 보호, 관리함이 타당함

라. 지정조사보고서

현지조사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7.4.14
- 조사자: 문화재위원 ,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김해 양동리 고분군(金海 良洞里 古墳群)의 연접구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김해 양동리 고분군(金海 良洞里 古墳群)”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지역명+문화재명인“김해 양동리 고분군(金海 良洞里 古墳群)”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가곡부락 뒷산(해발90m)에 위치 하는 고분군으로 면적은 3만여평 정도이며, 유적 발굴이후 봉분들을 복원해 놓고 있지 않아서 유적지의 분위기를 띄고 있지 않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김해 양동리 고분군은 기원전 2세기대로부터 기원 5세기대에 걸쳐 형성된 고분군으로서, 발굴조사 결과 다양한 묘제와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가야 국가 형성기로부터 발전기의 역사적 사실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유적은 일찍부터 김해지역 중심고분유적의 하나로 주목받은 곳으로서 1984년 문화재 연구소에 의해 처음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이래 1990~1996년간 동의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4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목관묘,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등 548기의 유구와 토기와 청동기, 철기 등 5,100여점에 이르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 확인된 유구는 묘제의 변천과정과 연대 규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출토된 각종 유물은 시기별 가야문화의 실상과 변화상을 한 눈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종래의 연구에서 부족했던 많은 자료를 보완하여 국제성을 띤 가야문화의 세련된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발굴성과를 통하여 가야사회의 문화와 국가·사회적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구야국(狗耶國) 또는 본가야(本伽倻)가 활발한 해상활동을 통하여 번성한 해양왕국(海洋王國)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2세기 후반에서 4세기까지가 가야철(伽倻鐵)의 전성기로서 해상활동도 가장 활발하여 외래문물도 해로를 통해 직접 유입되었던 가야시대의 번성기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철생산이 가야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은 동시에 철시장의 상실로 인한 가치 하락이 가야쇠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새롭게 부상한 신라나 백제의 압박으로 점차 쇠망하였다는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김해 양동리 고분군은 그 발굴성과를 통해 각 시기별 가야문물의 진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류지역 가야사회의 성장과 그 국가적 성격을 밝히는 귀중한 유적이라 할 것이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김해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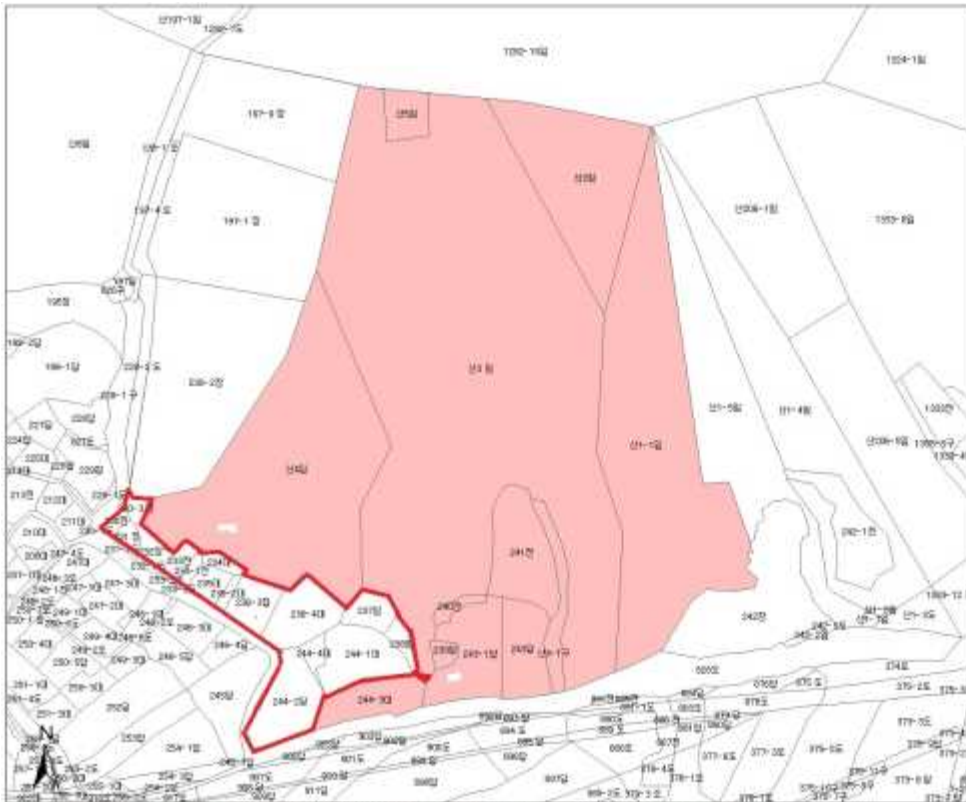
- 기 지정된 예안리고분군(51,826㎡)과 보호구역(5,372㎡)중심으로 고분군 및 고분군 관련 유적이 실제로 더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는 주변 지역에 대해 문화재 지정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더불어 현재 양동리고분군 주변 지역 양동리 마을은 김해시가지와 고속도로가 가까워서 그런지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 계속 들어설 예정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유적의 보호,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신청면적 : 21필지, 5,372㎡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230	전	96	96		
2		230-1	도	16	16		
3		230-3	장	96	96		
4		231	장	118	118		
5		231-1	도	18	18		
6		232	장	209	209		
7		232-1	도	26	26		
8		233	전	169	169		
9		233-1	전	96	96		
10		233-2	도	16	16		
11		233-3	도	3	3		
12		234	대	122	122		
13		235	대	255	255		
14		236-2	대	86	86		
15		236-3	잡	496	496		
16		236-4	대	863	863		
17		237	임	360	360		
18		238	임	182	182		
19		244-1	대	1,004	1,004		
20		244-2	답	983	983		
21		244-4	대	158	158		
계				5,372	5,372		

관리자,
점유자
상동



사적 제454호
 김해양동리고분군
 金海良洞里古墳群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3 차

범례

- 문화지
- 연속지적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축척 1:1,500

본 도면은 분해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승경하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복제 외 다른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추가 지정에 의한 500m 범위는 확대되나 현황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준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문화재주변 행위기준 설정사유 (구역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지는 사적 제454호 김해양동리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의거 2구역에 해당되며, 주변에는 문화재지정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추가로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지역은 기존 행위기준안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려고합니다 																									
행위기준 기준(안) (문화재청의 유사문화재 고시사항 참고)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현상변경허용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평지붕</th> <th>경사지붕 (10:3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2구역</td> <td>○ 최고높이 8m 이하</td> <td>○ 최고높이 11m 이하</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현상변경허용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평지붕</th> <th>경사지붕 (10:3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문화재보호구역</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문화재보호구역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문화재보호구역																										
평지붕과 경사지붕의 최고높이 기준이 다름																										
행위기준 도면(안) (별첨가능) * 주변 문화재 포함시 표기	<p>[기존]</p>		<p>[변경 안]</p>		<p>□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구역</p>																					
민원사항	○ 금번 지정하는 문화재보호구역은 양동리 고분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구역임																									
최근 3년간 현상변경 허가사항 (해당시)	○ 현상변경허가사항 없음																									
참고사항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재 보존·정비·활용 계획(안)											
사업개요 (총괄)	현 양동리 고분군				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 양동리 고분군 정비사업 ○ 위치 :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3번지 외 ○ 면적 : 51,826㎡ ○ 사업기간 : 2004 - 2011년 ○ 사업내용 : 부지매입, 관람로 및 광장조성 ○ 사업비 : 900백만원(국비 630, 도비 94, 시비1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 양동리 고분군 정비사업 ○ 위치 :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244번지 외 ○ 면적 : 5,372㎡ ○ 사업기간 : 2017 - 2021년 ○ 사업내용 : 부지매입, 관람로 및 광장조성 ○ 사업비 : 5,972백만원(국비 4,180, 도비 627, 시비1,165) 						
그간 보존·정비 실적	현 구산동 고분군				보호구역						
	관리상황 참조				-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 양동리 고분군				보호구역						
	현 문화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한 양동산성 복원과 대성동고분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보존 관리 ○ 시가지와 고속도로가 인접하여 공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임. 						
종합정비 계획안에 따른 문화재 학술조사, 정비계획	현 문화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대상지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시·발굴조사 실시후 현지자문회의를 거쳐 학술적 역사적 자료 집대성 						
문화재 활용 및 홍보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 활용방안(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야역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가야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함. 2. 주변 자원과 연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사적 대성동 고분군, 양동산성 복원으로 김해 관내 문화재 방문 활용 3. 시민단체 등 연계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시민단체 등의 가야역사문화 탐방 시책의 활성화 - 관광코스과 연계한 본 지역의 활용도 제고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단기,장기)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6 까지		2017 시행		2018 계획		2019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부지매입	5,972	부지매입	821	부지매입	1,000	부지매입	2,000	부지매입	2,972
	국비	(5,372㎡)	4,180	(5,372㎡)	575	(5,372㎡)	700	(5,372㎡)	1,400	(5,372㎡)	2,080
도비	및	627	및	90	및	110	및	220	및	312	
시비	주변정비	1,165	주변정비	156	주변정비	190	주변정비	380	광장조성	580	
기타 참고사항											

9. 종합 의견

- 김해 양동리 고분군은 기원전 2세기대로부터 기원 5세기대에 걸쳐 형성된 고분군으로서, 발굴조사 결과 다양한 묘제와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가야 국가 형성기로부터 발전기의 역사적 사실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확인된 유구는 묘제의 변천과정과 연대 규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출토된 각종 유물은 시기별 가야문화의 실상과 변화상을 한 눈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종래의 연구에서 부족했던 많은 자료를 보완하여 국제성을 띤 가야문화의 세련된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그러나 현 추가지정 요청 구역은 지정구역과 연접하여 공장이 입지한 곳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곳이 명확히 양동리 고분군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보호구역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며, 활용계획에도 단순히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지정구역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며, 경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장 등은 현황을 유지하면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통해 세밀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5. 용인 보정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용인 보정동 고분군의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2) 대상문화재명 : 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제500호 / 2009.06.24.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일원
- (3)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45 외 3필지

구분	현, 문화재구역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신청
면적	6필지 18,473㎡	4필지 996㎡

(4) 신청사유

- 용인 보정동 고분군은 중부지역 대표적인 삼국시대 고분으로 현재 문화재 구역이 2개소로 나누어져 문화재관리, 정비, 활용 등을 위한 공간이 전무하여 보정동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신청한 사항임

라. 지정조사 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7.05.11(목)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용인 보정동 고분군(龍仁 寶亭洞 高粉群)의 연접구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용인 보정동 고분군(龍仁 寶亭洞 高粉群)”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 현 용인 보정동 고분군과 같은 성격의 문화재로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지역명+문화재명인 “용인 보정동 고분군(龍仁 寶亭洞 高粉群)”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용인 기흥구 보정동 삼막곡 저수지 인근의 소실봉 남쪽 사면에 형성된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고분군
- 유적은 소실봉 능선 남쪽자락에서 확인되었는데 평지와 능선정상부의 상대적인 차이가 작은 나지막한 지역이며, 고분은 완만한 산 경사면을 따라 넓게 퍼져 있음.

4. 연혁 유래 및 특징

- 발견 당시 도굴과 산길 개설로 군데군데 파괴된 고분이 일부 드러나 있었으나, 대체로 양호한 보존 상태를 보이고 있었음.
- 2007년 신갈-수지간 도로공사 예정구간도 고분군이 포함되어 당시 발굴조사 후 고분군을 도로 위에 마련된 터널 위로 이전 복원하고, 내부를 공개하고 입구를 조성하여 교육의 목적으로 관람이 가능하도록 조성해 관리하고 있음.
- 현재 문화재지정구역 외곽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고분군 진입로와 울타리 외곽 곳곳에 문화유적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곳이 유적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 조치를 하고 있음.

- 2002.02.21. : 유적발견에 따른 긴급조치 요청(토지박물관)
- 2002.04.09. : 문화재지표조사(한신대박물관)
- 2003.6~10월 : 발굴조사(토지박물관)
- 2003.10월~2004.1월 : 정밀지표조사(기전문화재연구원)
- 2004.6월~2005.9월 : 발굴조사(신갈-수지간 도로건설구간 내,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유구 터널상로 이전 복원
- 2004.10월~2006.2월 : 발굴조사(삼막곡-연수원간 도로건설구간 내, 기전문화재연구원), 발굴유구 이전 복원
- 2007.2~7월 : 발굴조사(보정동 901-3, 한양대 문화재연구소)
- 2011.07.18.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 2011.10월~2012.8월 : 발굴조사(보정동 988-1, 서경문화재연구원)
- 2014.7~8월 : 긴급발굴조사(라-16호분, 한국문화유산연구원)
- 2014.09.03. :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 2015.6월 : 고분 보호각 보수공사
- 2015.2월~12월 : 종합정비계획 수립
- 2016.7월~12월 : 진입부 고분 발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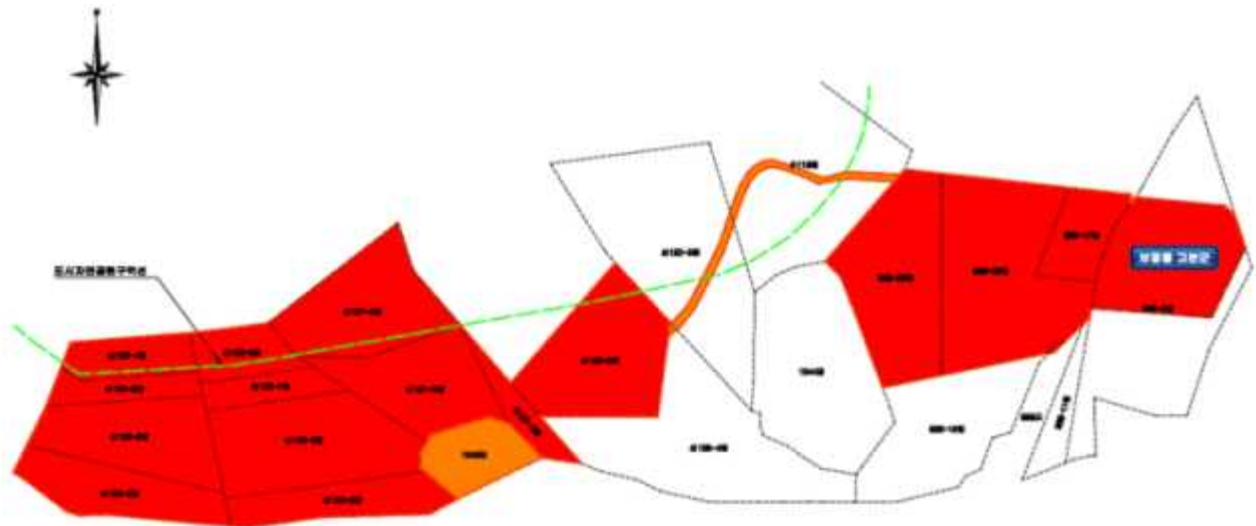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보정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효율적인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
- 진입로가 하나인 임야 내 문화재구역이 2개소로 분리되어 있어 관람동선의 정비가 어려우므로 연결 보행로를 추가 지정
- 고분군 내 전신주 및 통신주와 수목과의 마찰로 산불발생 위험 및 경관 저해 요인 이므로 연결 보행로 구간에 지중화
- 현 문화재구역 내 고분 관리, 편의시설 공간이 없으므로 1045번지를 추가로 지정하여 주차장, 안내소, 화장실 등 설치 활용

6. 지정 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현황	
						성명	주소
1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45	답	717	717	이해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8-1
2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19	임야	10,413	160	윤광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63번길 10
3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0-3	임야	2,998	112	이현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8길 47
4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0-4	임야	2,510	7	정문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8-1
계		4필지		16,638	996	사유	100%

-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구적도 현황(주황색)



○ 현 문화재구역 위성사진



○ 문화재구역 전체조감도



○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현장사진-1(전신주 및 통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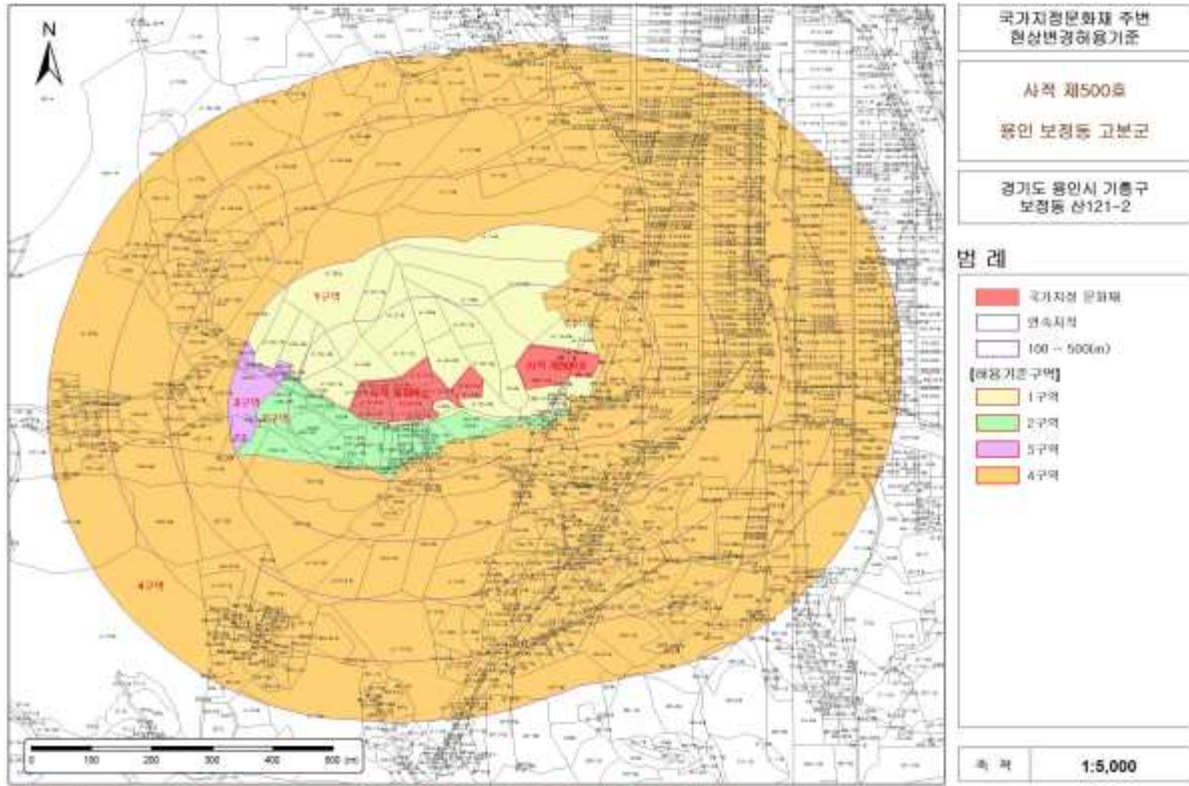


○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현장사진-2(보행로)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따로 떨어진 2개소를 지정구역 사이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역사문화환경의 확대는 없음. 따라서 현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따름.

9. 종합 의견

- 본 건물은 용인 보정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한 곳임.
- 용인 보정동 고분군은 2개소로 나뉘어 있어 이를 동선상 연결할 필요가 있음.
- 고분군 내 전신주 및 통신주는 산발발생 위험 및 경관 저해 요인이므로 연결 보행로 구간에 지중화할 필요가 있음.
- 현 문화재구역 내 고분 관리, 편의시설 공간이 없으므로 1045번지를 추가로 지정하여 주차장, 안내소, 화장실 등 설치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6. 경주 천관사지 경역정비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경역정비(팔각석탑 정비)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천관사지 경역 정비에 대한 사항(팔각석탑 정비)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경주 천관사지(사적 제340호 / 1991.01.09.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교동 244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경주 천관사지 경역정비>
 - 팔각석탑 정비, 농로 이설 등
- (4) 추진경과
 - '00.05월 ~ '13.06월 : 발굴조사(1~3차)
 - '14.04.30 ~ '15.06.26 :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 '16.07.27 : 실시설계용역 착수
 - '16.10.11 : ○○○ 교수 자문
 - 석탑 복원의 당위성 및 의견 수렴
 - '16.10.25 : ○○○ 교수 현지 자문
 - 석탑 형식 자문 및 팔각탑의 시기상 연대가 제일 빠르며 유일한 형태의 구조로 반드시 복원
 - '16.11.11 : ○○○·○○○·○○○ 교수 및 ○○박물관 ○○○ 자문회의
 - 석탑 비율 등 완벽한 복원을 위한 모형 제작 필요
 - 미 발굴된 기존 농로구간 추가 발굴하여 경역 확인 등
 - '17.02.16 : ○○○ 교수 자문
 - 팔각석탑 복원 설계도서 검토 및 의견 수렴

- '17.05.11 : 문화재청 조건부 설계승인
-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사업 추진

라. 의결사항

- 보류
- 석탑전문가 추가 자문 후 재검토

7. 원주 강원감영 정비복원 사업 변경 검토

가. 제안사항

강원도 원주시 소재 사적 제439호 「원주 강원감영」의 정비·복원을 위하여 사업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원주 강원감영 정비·복원 사업의 변경 요청(포정루 보수, 공방복원, 관련 시설 복원, 담장 설치 등)사항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원주 강원감영(사적 제439호 / 2002.03.09.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85
- (3) 신청내용<원주 강원감영 정비복원 사업 변경 검토>
 - 기존 사업내용

	품 명	공사 내용	비고
1) 건물복원	영주관	41.04m ²	
	봉래각	19.89m ²	
	채약오(3.80m ²), 조오정(3.31m ²), 책방(9.12m ²)		
2) 연지석축 복원	호안 석축	161.05m	
	채약오 석축	21.65m	
	영주관, 봉래각 석축	51.6m, 40.8m	
	방장대 석축	44.3m	
	입수구 배수로 석축	27.3m	
	기존 석축유구 보양	기존 유구를 변형 및 훼손시키지 않고 그 위치에 보양.	
3) 주변 복원 정비	부대공사	해체 및 철거공사, 일각문(1개소), 콘크리트포장(5.04m ²), 펌프실 설치(1개소), 기계설비	
	목교 설치	3개소	
	사괴석담장 재설치	3.6m	
	토석담장 설치	토석(진돌3단)담장 : 249.02M	
	조경 식재	총 61주 및 모란, 구절초, 부들, 연 식재	
	잔디 식재	158.44m ²	
	마사토 포장	1,664m ²	
	차수벽(C.I.P)공사	90m	
	지하수 개발공사	1개소	
보호수 보호조치공사	1식		

○ 추가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세부 사업내용	비고
1) 기존 건물 보수	포정루 (면적:40.83m ²)	양 협칸 출입문 복원 및 지붕기와 고르기	
2) 건물 복원	공방 복원(면적:45.36m ²)	기존 문헌기록에 남아있는 규모와 사진을 토대로 一자형 맞배지붕 건물 건립	
3) 시설 복원	선화당 정면 측우대 설치	문헌과 사진을 토대로 측우대 복원 경상감영 측우대(보물 제842호)와 동일하게 제작설치	
	선화당 정면 계단 설치	옛 사진을 토대로 현 계단 좌,우측 계단 설치.	
	태을선 복원	사료(봉래각 전도)를 토대로 연지내 태을선 복원	
4) 주변 정비	담장 설치	내삼문 좌,우측으로 경역 구분을 위한 토석담장 설치 길이=62.0m, 높이1.5m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 현재 원주 감영은 복원 2단계(후원 구역)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1단계(선화당 구역) 정비사업 시 미비한 사항과 과거 왜곡된 문화재 보수로 원형을 잃은 문화재의 원형을 회복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태을선 복원 제외

8. 원주 법천사지 종합정비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강원도 원주시 소재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 체계적인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원주 법천사지(사적 제466호)의 체계적인 정비·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원주 법천사지(사적 제466호 / 2005.08.31. 지정)
 - 소재지 :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번지 외
- (3) 사업내용<원주 법천사지 종합정비계획(안)>
 - 발굴구역 범위 등 발굴조사 계획
 - 동선 및 시설물 배치계획
 - 진입로 등 도로설치 계획
 - 유구 영역 및 전체 배수계획
 - 발굴조사된 구역에 대한 유구정비 계획
 - 성토+결실부재 보충
 - 성토+잔존유구 노출
 - 성토+기단선 표시
 - 현황유지, 복토
 - 탐방시설 계획
 - 도로 및 탐방로, 안내판, 주차장, 화장실 등 설치
 - 조경식재
 - 석조유물관리실(전시관) 설치

라. 추진경과(전문가 자문의견)

(1) 관련 전문가 제1차 자문회의('16.07.29./○○○, ○○○, ○○○, ○○○, ○○○, ○○○)

- 과업의 내용범위, 사적 범위확대, 유구정비 방법 및 복원기준 시대, 탐방 시설 등 논의

(2) 관련 전문가 제2차 자문회의('16.12.21./○○○, ○○○, ○○○, ○○○, ○○○)

- 정비계획의 내용 및 방향, 경관 및 조경, 발굴조사, 진입로, 건물지, 배수 계획, 활용계획 등 논의

(3) 관련 전문가 제3차 자문회의('17.02.17./○○○, ○○○, ○○○, ○○○, ○○○)

- 전체 배치계획, 유구정비계획, 조경계획, 전시관 설치 등 논의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9. 공주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변경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387호 「공주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주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신청함
 - 기존 : 2004년 공주우금치전적지 복원정비 기본계획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우금치 전적(사적 제387호 / 1994.03.17. 지정)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금학동 산78-1 일원
- (3) 신청내용
 - 종합정비계획 변경

기존	금회(안)
- 학술조사 및 토지매입 - 부지조성 및 주차장 설치 - 기념관·조형물·화장실·망루 건립 - 위령탑 보수정비 - 음수대·파고라·벤치·탐방로 조성 -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 생태공원 조성 및 옛길복원 - 야영장 및 군막(수련원), 웅스 - 자전거도로 및 가로변 정비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령탑 및 주변설치물 보수정비 - 기존화장실 주변 차폐수림 조성 - 수목정비, 안내판설치 - 기억의 공간(조형물) 설치 - 메시지 전달공간 - 보행로 야자매트 설치 - 방문자센터(교육, 전시) - 주차장 정비 - 안내판 정비
	중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공원조성(10,557㎡) : 기념자료관, 야외전시장, 진입도로 등 - 기타 : 공주 구도심 연결 트레킹코스개발,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

- '17년도 사업내용
 - 위령탑 보수(노후된 시설 보수), 주변 불법구조물 철거 및 정비, 안내판 정비, 주차장 기반조성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

10. 나주읍성 북망문 복원 관련사항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북망문 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성문의 복원 형식에 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발굴조사 약보고서('13.3)를 바탕으로 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발굴유구 및 고문헌(1872년 고지도)을 바탕으로 정면은 홍예식 배면은 평거식으로 구성하기로 함
- 그러나, 공사 추진간 개거식이라는 의견 제기가 있어 2차례 기술지도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
-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16.3.9) 검토결과 “보류” 결정됨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검토('16.4.5)한 후 문화재위원회('16.5.11)에 상정하여 “조건부 가결” 되었음
- 승인 조건에 따라 연구용역 실시 후 문화재위원회('16.9.7) 상정결과 “보류” 결정되어 소위원회 재검토('16.10.25)한 후 문화재위원회('16.11.9)에 재상정하여 “부결”되었음
- 문헌자료 중 근대 나주읍지인 『續修羅州誌』에 북망문 형태가 ‘虹門’이라는 기록이 있어 해당 자료를 토대로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17.2.15, 4.12) 검토결과 “보류” 결정됨에 따라 추가 고증 자료 확보 후 재상정하는 건임
 - 기존 고증 자료 : ① 발굴조사 약보고서 외 발굴자료, ② 고지도 9건, ③ 읍지 8건, ④ 금성정의록 외 기타 나주관련 근대문헌자료, ⑤ 왕조실록(고종, 순종) 및 관보(1895년 이후), ⑥ 일본 병사중군일기(동학농민전쟁), ⑦ 나주관련 근대신문자료, ⑧ 조선총독부문서(조선유적조사보고서)
 - 추가 고증 자료 : ① 문확과 측벽과의 거리가 15cm 이상인 홍예문 사례, ② 『羅州郡誌』(195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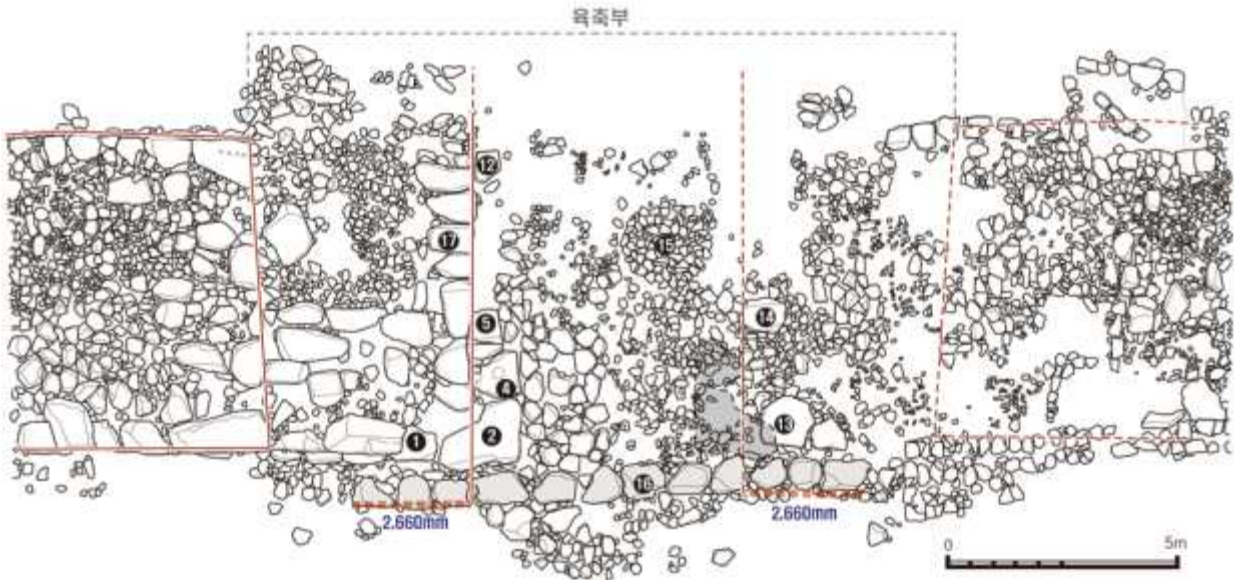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읍성(사적 제337호)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
- (3) 신청내용
 - 나주읍성 북망문 성문 복원 형식 검토
 - 1안 : 홍예식 + 평거식
 - 2안 : 개거식
 - 3안 : 홍예식
- (4) 신청사유
 - 발굴유구에서는 성문 형태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도출되지 않았음
 - 기존 고증 자료(발굴유구, 고지도, 문헌자료 등) 및 추가 고증자료(『羅州郡誌』(1955년))를 분석한 결과 3안(홍예식)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홍예식으로 복원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발굴 유구 분석

- 기 발굴된 나주읍성 서성문(개거식)과 동점문(홍예식) 유구와 비교분석






(아래 도면과 수치는 개구부 내에 위치한 각 석재의 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



나주읍성 북망문 발굴유구 모습

- 성문은 미조사된 남고문을 제외한 동점문, 서성문, 북망문이 모두 2차례 이상의 변화가 있었음(현재까지 남아있는 先代 유구들로 인해 유구의 해석에 있어 혼선이 야기됨)
- 북망문, 서성문 동점문은 모두 先代에는 3칸 구조의 개구부(통로)를 갖추고 있었음
- 여러차례 변화를 겪은 후 최종단계에는 북망문, 서성문 동점문 모두 한칸 구조의 개구부(통로)였을 것으로 추정됨
 - 고증결과, 북망문 최후단계 개구부(통로) : 1칸(문폭 크기 약 360cm 내외)
 - 발굴유구비교분석 결과, 문지도리석이나 기타 석재의 위치 등이 동점문(홍예식)과 유사함
 - 나주읍성 동점문(홍예식)의 경우 문확과 측벽과의 거리가 46.7cm로 15cm 이상인 사례가 확인됨
 - 문확과 측벽과의 거리가 15cm이상인 홍예문의 추가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고지도 분석(19세기 편찬 지도)

		
호남읍지 나주지도(1871년)	조선후기지방지도(1872년)	나주군읍지 지도(1899년)

- 1871년의 『호남읍지』 <나주목여지승람> 내 지도와 1872년에 제작된 『조선후기지방지도』 <나주지도>에 모두 북망문이 홍예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발굴조사 고증결과와 동일한 결론이 도출됨
- 그러나 1899년 『나주군읍지』 내 지도에는 북망문이 개거식으로 표현됨
 - <1899년 지도>는 1895년 이후 갑오개혁 및 광무개혁 이후의 지방재편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지도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베껴 써놓음
 - <1899년 지도>에서 행정구역, 도로, 하천, 관영시설 위치 등 다량의 오류 확인

※ 위 3종의 읍지도에 대한 자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① ... 1872년에 제작된 군현지도는 읍지 속 지도에 비해 3배, 면적으로는 9배 이상 큰 축척이므로 더욱 정교하고 정확하게 그렸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로 판단할 수 있음 ...

○○○(○○대) 자문의견서 내용 중

② ... 1899년 지도(나주군읍지, 1899, 규10781 : 이하 <1899년 지도>로 약칭)는 1871년 지도(호남읍지의 나주목지도, 규12175 : 이하 <1871년 지도>로 약칭)를 저본으로 한 일종의 모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871년 지도>와 <1899년 지도> 중 당시의 실재를 잘 반영한 것은 역시 <1871년 지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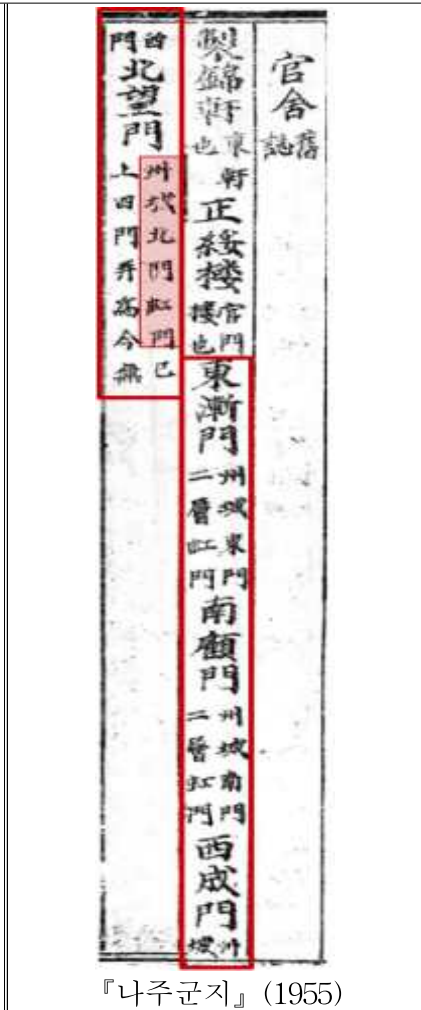
○○○(○○대) 자문의견서 내용 중

③ 위 자문의견과 더불어 ‘<1871년 지도>는 새롭게 그려서 上送한 것으로 실상에 가까운 자료로 판단됨, <1872년 지도>는 사실에 가까운 유일무이한 자료로 평가됨, <1899년 지도>는 내용상 매우 부실한 점이 엿보이며, <1871년 지도>와 표현방법 등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1871년 지도>를 모사하여 편집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자문의견도 있었음

○○○○○○○○○○(○○도서관) 통화자문 내용 중

(3) 문헌분석

- 1920년 『續修羅州誌』와 1955년 『羅州郡誌』에서 북망문 ‘虹門’이라는 기록 확인
- 『續修羅州誌』의 읍성 4대문 형태에 대한 기록은 기존 나주 지리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주 읍성 형태에 대한 최초의 기록임
- 『續修羅州誌』에는 동점문과 남고문, 북망문에 ‘虹門’이라 덧붙이고, 서성 문은 단순히 ‘西門’이라고만 하여 성문형태에 대한 차이를 표현하고 있음
 - 『續修羅州誌』는 나주목사 谿谷 張維(재임 1629~1630)가 완성하지 못한 지리지를 300년 후에 나주군수 이우규(재임 1896~1897)가 지역 유지들과 뜻을 모아 『금성읍지』(1897년)로서 완성하였고, 이를 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증보하여 편찬한 나주 지리지임



- 『續修羅州誌』는 1920년까지의 나주의 다양한 변화상은 물론 당시 신설 행정청 및 은행, 우편소, 보통학교 등 새로운 시설까지 신증 기록함
 - 『續修羅州誌』의 저자 羅政集(1870~1939, 官 莊陵參奉, 편찬 당시 49세~50세)은 삼도면 삼도리에 거주하던 인물로 나주읍성 4대문이 훼손된 1910~1912년 당시에는 그의 나이가 40~42세였음
 - 또한 거주지인 삼도면은 나주 북망문을 주통로로 이용하는 곳이어서 증보 기록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됨
 - 『續修羅州誌』 편찬에 참여한 羅燾佑는 1897년 『錦城邑誌』와 1926년 『全羅南道誌』의 저자이기도 함
 - 『羅州郡誌』는 도유사 羅燾線 외 92인이 편찬작업에 참여함
 - 『續修羅州誌』와 『羅州郡誌』의 범례에 의하면 두 개 읍지 모두 이전까지의 모든 나주읍지를 집대성한 것으로, 그 기록들을 기반으로 교정, 증보, 신증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범례 : 『續修羅州誌』 ‘舊誌’, ‘續修’ ‘新載錄’, ‘追錄’
 『羅州郡誌』 ‘舊誌’, ‘正筆’, ‘依舊增新’, ‘新載錄’, ‘辨詳’ ‘合錄(남평현지)

(4) 지자체의견

- 성문형태에 대한 고증연구(발굴유구, 고지도, 문헌자료 등) 결과, 나주읍성 북망문이 홍예문임을 확인하게 됨
 - 발굴유구에 대한 분석 결과, 문지도리석이나 기타 석재의 위치 등이 동점문(홍예식)과 유사함
 - 19세기 고지도 중 가장 정확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는 1871년 『호남읍지』 <나주목여지승람> 내 지도와 1872년에 제작된 『조선후기지방지도』 <나주목지도>에는 북망문이 홍예식으로 표현되어 있음
 - 특히 근대 나주 읍지인 『續修羅州誌』(1920)와 『羅州郡誌』(1955)에서 북망문 형태가 ‘虹門’이라 쓰여진 기사가 확인됨
 - 더불어 『나주읍성 북문지』 발굴보고서(2017년)에는 북망문 발굴 유구가 ‘홍예문에 가깝다’는 결과가 제시됨
- 위와같은 고증결과를 바탕으로 3안(홍예식)으로 복원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소위원회 구성하여 논의 후 재검토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7-06-057

1. 중요 문화재 사용 석회 시편 채취 보고

가. 제안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유산 조사연구』(R&D)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통 석회재료 품질개선 연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석회 시편을 채취하고자 합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 석회재료 품질개선 연구」 과제와 관련, 중요 문화재에 사용된 석회재료의 현황과 보존 상태를 파악하고 연구용 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적 13곳에서 대한 석회 시편을 채취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2) 조사개요
 - 대상문화재: 수원 화성(사적 제3호) 등 10곳(조사 대상 붙임 참조)
 - ※ 2017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대상 4곳 포함
 - 조사기간: 2017년 6월 ~ 11월(6개월간)
 - 추진방법: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체 추진(복원기술연구실, 건축문화재연구실)
 - 추진내용
 - 문화재별 석회의 사용 현황과 보존 상태 조사
 - 최초 시공 및 수리 시기 별 석회 시편 확보
- (3) 심의내용
 - 보수정비 대상(4건): 수리 과정에서 제거된 석회 시편 채취
 - 보수정비 미대상(6건): 사전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지점을 중심으로 박리·박락, 탈락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석회 시편 채취
- (4) 향후계획
 - 채취한 석회 시편의 재료학적 특성 분석('17년 6월~)

라. 의결사항

○ 접수

중요 건축문화재 석회 조사 대상 목록

연번	구분	소재지	종목	문화재명	비고
1	성곽	경기 수원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세계유산
2	성곽	경기 광주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세계유산
3	성곽	경기 김포	사적 제139호	문수산성	
4	성곽	전북 고창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17 보수정비 대상
5	성곽	경기 강화	사적 제225호	강화 초지진	'17 보수정비 대상
6	성곽	경기 강화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17 보수정비 대상
7	건물	경남 함양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17 보수정비 대상
8	고분	충남 공주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 고분군	
9	고분	충남 부여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10	고분	경북 고령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2. 고양 서오릉 내 역사문화관 친환경 관리시설물(태양광판) 설치 보고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내에 역사문화관 지붕 상단의 친환경 관리시설(태양광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친환경 문화재 관리시설물(태양광판) 설치를 통해 문화재관리에 필요한 전력사용의 신재생에너지 대체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 친환경 에너지 사용은 지속가능한 문화재보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에 친환경 문화재관리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오릉(사적 제198호)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2번지
- (3) 신청내용 <서오릉 역사문화관 지붕에 태양광판 설치>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2번지(문화재구역)
 - 사업개요
 - 설치물 : 태양광판 24장 설치 (1장; 1000mm×1960mm×46mm)
 - 설치면적 : 12,110mm×3,918mm (12장×2열)
 - 발전량 : 연간 10,512kw / 1일 28.8kw (8kw×1일 평균 일조량 3.6시간)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7.06.05/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 (원안) 역사문화관 돌출형 가림막 상부 태양광 설치 안 관련
 - 태양광 발전 시설을 소규모로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여겨짐
 - 현재의 위치는 경관상 적절치 않으므로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소규모로 위치 재배정 요함.

(2)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7.06.08/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수정안) 역사문화관 지붕면 태양광 설치 안 관련

- 본 건은 서오릉의 역사문화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붕면에 밀착하여 낮게 구성되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마. 의결사항

- 접수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주변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18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85-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0m 이격/9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30.6㎡ - 건축면적/연면적 : 83.3㎡/83.3㎡ - 층수/최고높이 : 지상1층 / 4.9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허가	'17.05.29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전남 강진군	○○○	<건물 신축>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232번지 12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물 신축(1동) : 건축면적 99.61㎡ / 연면적 99.61㎡ / 높이 5.9m(1층, 경사지붕) / 경량철골조	허가	'17.05.18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전남 강진군	○○○	<저온저장고 설치>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2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4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설치(1동) : 바닥크기 4m×2.5m / 높이 3m / 우레탄판넬	허가	'17.05.30
사적 제70호 부안 진서리 요지	전북 부안군	○○○	<건물 신축> ○ 위치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584번지 19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물 신축(1동) : 건축면적 125.74㎡ / 연면적 99.28㎡ / 높이 5.3m(1층, 평지붕) / 목구조	허가	'17.05.3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70호 부안 진서리 요지	전북 부안군	○○○	<p><건물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558번지 2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6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신축(1동) : 건축면적 30.42㎡ / 연면적 30.42㎡ / 높이 4.29m(1층, 경사지붕) / 경량철골조 	허가	'17.05.30
사적 제73호 김해 수로왕릉	경남 김해시	○○○	<p><제11회 김해식품박람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김해시 봉황동 431 일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8m 이격/1구역) ○ 사업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일자: 2017.5.12~5.14(3일간) - 행사장소 : 경남 김해시 봉황동 431 일원 - 주요시설 : 몽골천막(4m*4m) 120개, 무대, 음향, 테이블, 조명 등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철저 - 신청사항과 동일하게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17.04.27
사적 제118호 진주성	경남 진주시	○○○	<p><제16회 진주논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통영시 문화동 62번지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일자 : 2017.5.26~5.28(3일간) - 시설계획 : 천막 44개소, 야외무대 1개소, 수상무대 1개소 등 ○ 허가조건 : 행사 전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진주시의 사전 검토 및 지도·감독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행사시간, 행사내용 등은 진주시의 지도를 받아 결정하도록 함. - 행사 전 과정에서 화기의 사용을 금함 - 행사 참가자들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을 조치한 후 행사를 진행하도록 함. - 문화유적 및 관리시설의 훼손 및 손상 행위를 금함. - 행사질서 및 행사장소 주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함. 	조건부 허가	'17.05.12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27호 진도 남도진성	전남 진도군	○○○	<p><통신전주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 24-3(문화재구역으로부터 14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17.04.19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전주 설치(1기) : 최고높이 19m / 이동통신 중계용 ※ 기존 통신전주 2기 철거 ○ 변경내용 : 기존 통신전주 2기 중 1기만 철거, 1기 재사용 	허가	'17.05.30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단독주택 위치 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439번지 59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420m 이격/1구역) ○ 기 허가사항 : 단독주택 및 차고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2층(주택)/차고(지하1층), 신청면적 : 823㎡ - 주 1동 : 주택(높이 : 7.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연면적 : 113.53㎡170.17㎡ · 구조/크기 : 경량목구조 지하층, 지상 2층 - 부 1동 : 주차장(건물높이 3.2m, 난간 1.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연면적 : 38.5㎡38.5㎡ · 구조/크기 : 철근조 지하층 ○ 변경사항 : 주택1동 2.1m 위치 이동 	허가	'17.03.14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경북 경주시	○○○	<p><다세대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천동 343-4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5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3층 / 1,314.3764㎡ / 3개동 · 성토깊이(0.7~1.7m), 성토량 1,292.1㎡ · 옹벽높이(0~2.0m), 옹벽길이 82m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금속판넬) - 건물용도 : 공동주택(다세대주택-14세대) - 건물높이 : 11.55m - 차폐식재 : 은행나무 14그루(높이 약 11m) 	불허	'17.05.2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89호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충북 충주시	○○○	<건축물 신축> ○ 위치 : 충북 충주시 단월동 436-5 ○ 사업내용 - 대지면적 410㎡ - 건축면적 80㎡ - 규모 1층(1동, 4.4m)	허가	'17.05.26
사적 제189호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충북 충주시	○○○	<도시계획도로 개설> ○ 위치 : 충북 충주시 단월동 505-7 등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112m×6m)	허가	'17.05.26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서울시 종로구	○○○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허가사항 변경 허가)>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7-24 일원 ○ 사업내용 : 돈의문박물관마을 경계시설 변경 ○ 허가조건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조건부 허가	'17.05.26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경주국립공원 훼손탐방로 정비>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동 490(문화재 구역) ○ 사업내용 : 망월사 방재시스템 구축공사 1)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통합재난관리 Server Core I7 4790 3.6Ghz 본체설치 -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화재, 침입,도난,훼손,온도,습도,연기등 SW 설치 - CAMERA POLE SUS/3M철주조립 및 설치 - CCTV CAMERA(스피드돔/실외형) 200만화소/IR카메라설치 - CCTV CAMERA(실외형) 200만화소 /IR /3.6mm 카메라설치, 제어신호 및 영상조정 - 통합무선센서온도/연기/습도/인체감지 무선센서설치, 불꽃감지기DC24V/유 효감지거리 50M / 불꽃감지기 전원 반 제작품/DC24V - 알람발생기(경광등)/방화벽/통신배관 공사 설치/ 장비합체제작품 2) 전기화재예측시스템 구축 ○ 허가조건 - 터파기 공사시 관계전문가 입회 필요 -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허가기간('16.10.14~'16.12.31) 내 착공 하지 못해 재신청한 건임.	조건부 허가	'17.06.0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시 종로구	○○○	<상수도관 교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31-1 (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상수도관 교체 (L87m*D200~300mm)	허가	'17.05.26
사적 제511호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	충북 진천군	○○○	<사당 신축 등> ○ 위치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산 50-3(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0m 이격) ○ 사업내용 : 사당 신축 및 진입로 확장 - 건축면적 : 54m ² - 규모 : 1층(7.15m)	허가	'17.05.26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을곡교육연수원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 사업내용 - 본관동 및 후관동 장애인용 승강기 및 외부 경사로 설치	허가	'17.05.29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을곡교육연수원 생활관동 장애 인용 승강기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 사업내용 - 생활관동 장애인용 승강기 위치 확정 설치 및 외부 경사로 신설	허가	'17.05.29

다. 의결사항

- 접수